

알아두면 편리해요 !

●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 법률지식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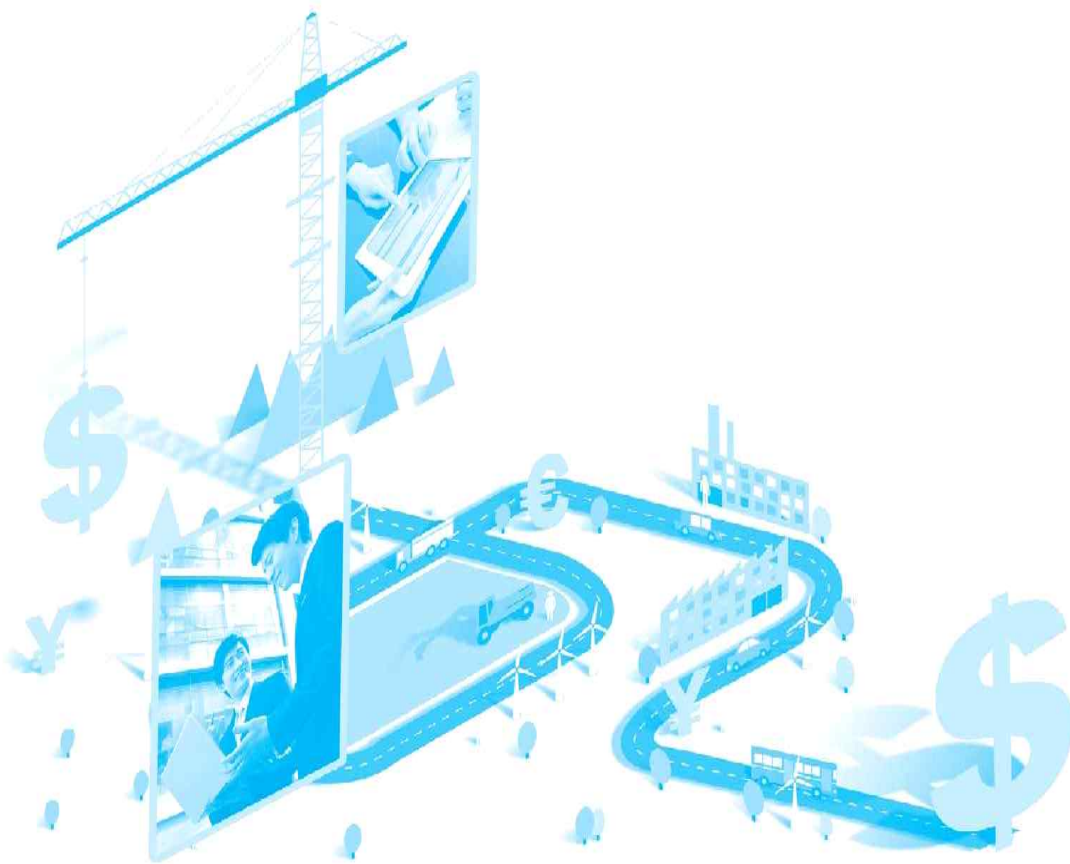
- ▶ 기업마당(중소기업청)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이 책자는 중소기업이 조세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률 조항을 다시 확인 하시거나 조세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간행물발간등록번호

11-1420000-000375-10

2016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중소기업청



한국세무사회

Contents



제 1 장 조세지원제도	5
1-1	6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0
1-3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요약	11
제 2 장 중소기업의 범위	19
2-1 중소기업의 범위	20
2-2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28
제 3 장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30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1
3-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5
3-3 창투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7
3-4 배당소득 과세특례	39
3-5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41
3-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납부특례	43
3-7 주식매수선택권에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44
3-8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46
3-9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48
3-10 증권거래세 면제	50
3-1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52
3-12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55
3-13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58
3-14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59
3-15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61
제 4 장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63
4-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4
4-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75
4-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79
4-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81

Contents



4-5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83
4-6	접대비 손금산입	84
4-7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86
4-8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88
4-9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89
제 5 장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91
5-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92
5-2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95
5-3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99
5-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1
5-5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3
5-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04
5-7	환경보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6
5-8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07
제 6 장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	109
6-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10
6-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116
6-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119
6-4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21
6-5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123
6-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125
6-7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27
6-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129
6-9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130
제7 장	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132
7-1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133
7-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36
7-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40
7-4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43

Contents



제 8 장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145
8-1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46
8-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151
8-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54
8-4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56
8-5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58
8-6 농공단지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59
8-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160
8-8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162
8-9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164
제 9 장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166
9-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67
9-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9
9-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73
9-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175
9-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176
9-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 인정	177
9-7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78
9-8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79
9-9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1
제10장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183
10-1 가업상속공제	184
10-2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193
10-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94
제 11 장 조세특례의 제한 등	198
11-1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199
11-2 중복지원의 배제	205
1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207

1장

-
- 1-1 조세특례제한법 • 6
 - 1-2 지방세특례제한법 • 10
 - 1-3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요약 • 11



1-1

법인 및 내국인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의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

개념 및 용어

-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에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위한 제도
- 내국인 등 :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동일한 내용의 용어를 준용

어	정 의
내 국 인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
과 세 연 도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익 금	자본의 납입 등을 제외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
손 금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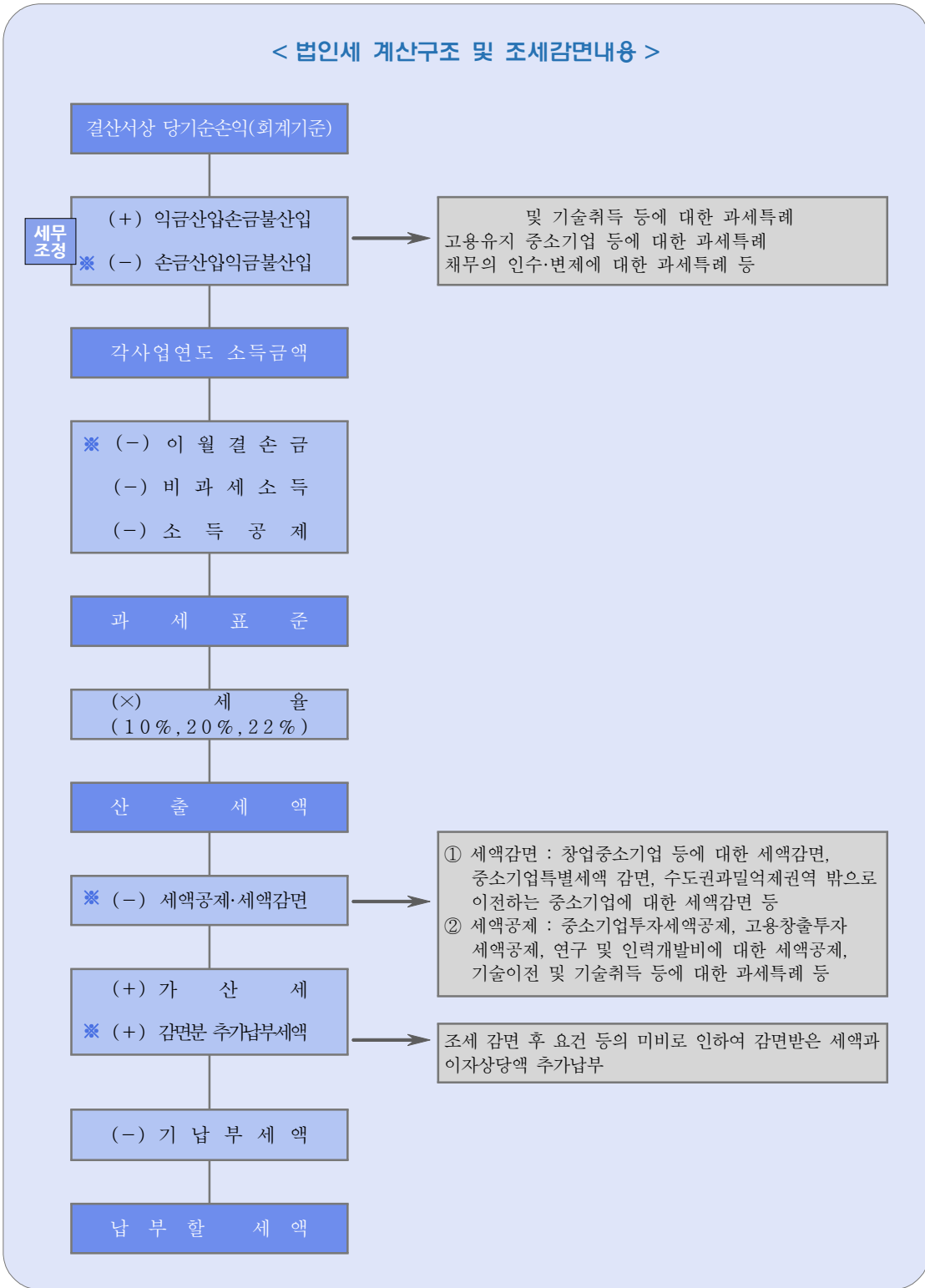
-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조세감면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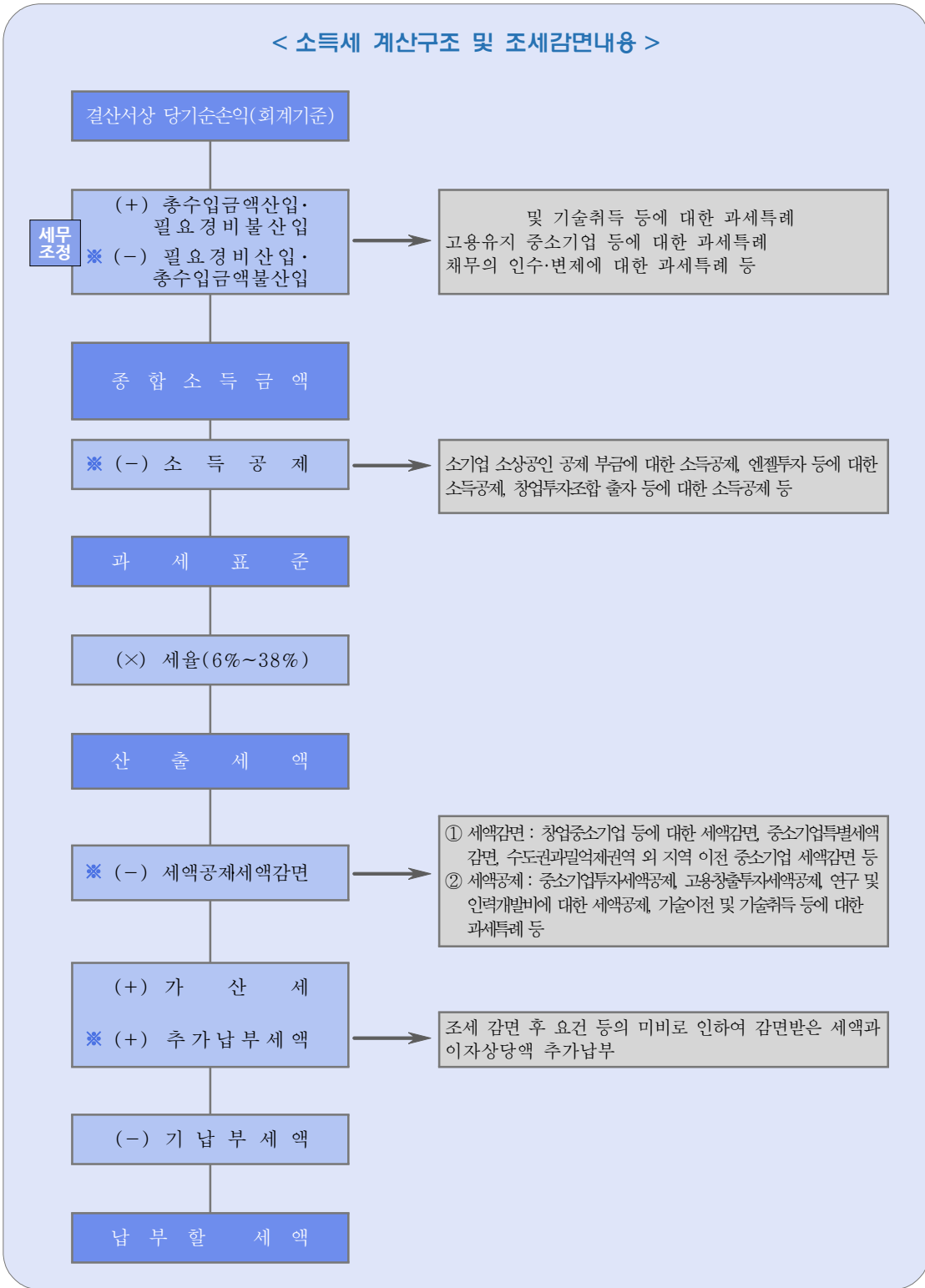
- ① 직접지원 : 비과세나 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경감세율의 적용과 같이 조세의 감면 효과가 영구적으로 미치는 조세지원제도
- 비과세 : 그 성질이나 국가정책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수익·행위·재산)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써 비과세를 위한 별도의 절차나 별개의 행정처분이 불필요
- 세액감면 또는 면제 :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일단 세액을 확정하고 별도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해당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

- **소득공제** :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 **세액공제** :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
 - **저율과세** : 일정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어서 과세하는 제도
 - **분리과세**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시켜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 ② 간접지원 : 일정시점에 조세를 감면한 후 일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면한 조세를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과세이연을 시켜주는 조세지원제도
- **준비금제도** : 특정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준비금을 당해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
 - **충당금제도** : 보조금 등(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을 수령한 경우에 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 등을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
 - **분할익금제도** : 특정한 경우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에 의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부담의 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양도차익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여 조세부담을 일정기간동안 부담시키는 제도
 - **이월과세** :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
 - **과세이연** :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비율만큼 추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제도

< 법인세 계산구조 및 조세감면내용 >



< 소득세 계산구조 및 조세감면내용 >



1-2

법인 및 내국인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제도

개념 및 용어

- 지방세 특례란 특정산업의 진흥, 특정집단의 경제활동의 촉진 등을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등의 조세감면제도
- 고유업무 :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 수익사업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
- 직접사용 :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
-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조세감면의 유형

-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할 수 없으며, 법률이 해당 대상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 **감면** :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정산업의 육성지원, 농어민생활의 지원, 국민생활안정 등 특수한 사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 **소득공제** : 각 과세연도에 일반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대한 조세지원제도 요약

중소기업

1-3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조세지원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분	지 원 내 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면제 및 감면 <small>☞ p.31</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법인 설립시 등록면허세 면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감면 •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창투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small>☞ p.35</small>	창투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의 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코넥스 상장기업에 출자 ② 창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을 통해 ①의 기업에 대한 출자
창투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small>☞ p.37</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투자,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창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배당소득 과세특례 <small>☞ p.39</small>	다음의 배당소득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① 창투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②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③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소득 ④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소득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small>☞ p.41</small>	일정요건을 갖춘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 배제

구분	지원내용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 ☞ p.43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가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p.44	벤처기업의 임직원(기숙자 등 조건만족)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단, 벤처기업은 행사비용에 대한 경비는 손금불인정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p.46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음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p.4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1천5백만원이하분 100%,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분 50%, 5천만원초과분 30%)를 2년 이내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 p.50	창업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창업자금 사전상속 ☞ p.52	60세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자금(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고용시 50억 한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 후 상속시 정산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 p.55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시행자,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하여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벤처기업과 전략적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p.58	비상장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소유한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전략적제휴 계획에 따라 제휴법인의 주식과 교환 또는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제휴법인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p.59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이후 7년 이내인 기업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의 80%이상을 벤처기업등에 재투자한 경우 당해 주식을 처분할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p.61	중소기업진흥공단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용자받은 일정요건의 재기중소기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체납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분	지원내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p.64	중소기업으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법인(소득)세 감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소기업</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중기업</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 : 10% • 수도권안 도매업등 외 : 20% • 수도권밖 도매업등 외 : 30%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밖 도매업등 : 5% • 수도권밖 도매업등 외 : 15% • 수도권안 지식기반산업 : 10% </td> </tr> </tbody> </table> <p>※ 도매업등 :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p>	소기업	중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 : 10% • 수도권안 도매업등 외 : 20% • 수도권밖 도매업등 외 : 30%
소기업	중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 : 10% • 수도권안 도매업등 외 : 20% • 수도권밖 도매업등 외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밖 도매업등 : 5% • 수도권밖 도매업등 외 : 15% • 수도권안 지식기반산업 : 10% 			

분	지 원 내 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p.75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을 30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p.79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무계산서의 작성 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0.2%, 16~60일 이내인 금액의 0.1%를 세액 공제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 p.81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 자영업자에 대하여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p.8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 (100만원한도)
접대비의 손금산입 ☞ p.84	2,400만원(월할계산) 한도 접대비 손금산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p.86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납부한 법인(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 p.88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인증 후 5년간 법인(소득)세 50~100%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 p.89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5년간 법인(소득)세 50~100%감면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p.92	사업용 자산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투자금액 및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투자금액(중고품 제외)의 3%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p.95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아래 ①+②금액 세액공제 ① 기본공제금액 : 투자금액 × 3%(중소기업 외 0%~2%) ② 추가공제금액 : 투자금액 × 4%~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p.99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 시설등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하는 금액(중고 및 리스제외)의 7%(일반기업3%)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p.101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 금액(중고품 제외)의 1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 세액공제

구분	지원내용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p.103	영유아 직장보육시설 등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 투자금액의 7%(10%) 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p.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 폐쇄(축소) 후 국내 복귀시 5년(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법인세 등 감면 • 해외진출 중소기업 국내복귀로 인한 자본재 수입시 관세 100%(50%) 감면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p.106	청정생산시설 등 환경보전시설 투자 금액(중고품 제외)의 10% 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p.107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중고품 제외)의 7% (3%,5%) 세액공제(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투자시 10%)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원

분	지원내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p.110	①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 30% ② ①을 제외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 ㉡ 중 선택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발생액 초과금액 × 50% ㉡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용 × 25%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p.116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과세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 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p.119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금액(중고품 제외)의 6%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p.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0% 세액감면 • 특허권 등의 취득금액 7% 세액공제 • 특허권 등의 대여금액 25% 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p.12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는 3년간 소득세(법인세) 전액 면제하고 그 후 2년간 50% 감면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p.125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구 분	지 원 내 용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p.127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p.129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50% 세액감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p.130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75%감면

중소기업의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 p.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후 법인에 사업용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세액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 통합하는 경우 잔존 감면기간 승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p.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 이월과세 및 법인의 취득세 면제 •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p.140	전환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전환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전환전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p.143	업종전환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 감면 (5년 이상 사업영위 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 p.14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할 경우 이전 후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세액감면

구분	지원내용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p.151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할 경우 이전 후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세액감면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p.154	대도시 공장시설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p.15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p.158	10년 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 2년 거치 후 2년 동안 균등액 익금산입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p.159	농공단지, 개발촉진지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 p.160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또는 5년간 법인세 50%감면 및 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이월과세 적용 등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 p.16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점(주사무소)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 p.164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분	지원내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p.167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12.1.1~'18.12.31)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70% 세액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p.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감소한 임금총액의 50%를 소득공제 해당 상시근로자는 감소한 임금총액의 50%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1천만원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p>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p.173</p>	<p>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금액 (청년 상시근로자 100%, 청년 외 상시근로자 5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p>
<p>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 p.175</p>	<p>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중소기업에 복직된 경우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10%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p>
<p>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p.176</p>	<p>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당 200만원 세액공제</p>
<p>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인정 ☞ p.177</p>	<p>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성과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손금으로 인정</p>
<p>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p.178</p>	<p>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고용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p>
<p>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 p.179</p>	<p>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평균임금 증가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p>
<p>청년고용 증대 세액공제 ☞ p.181</p>	<p>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에 500만원(대기업은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p>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기업상속 공제 ☞ p.184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을 대표로 재직한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기업상속재산가액(200억 ~ 500억 한도)을 과세가액에서 공제
기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 p.193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부연납허용 ①기업상속재산 50%이상 : 3년거치 12년 분납 ②기업상속재산 50%미만 : 2년거치 5년 분납
기업의 승계에 (중소기업주식사전상속)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 p.194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 또는 그 배우자 에게 주식 등을 증여(100억원 한도)하는 경우 증여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분은 20%의 세율로 과세 후 상속 시 정산

조세특례의 제한 등

분	지 원 내 용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 p.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등의 계산시 각종 감면을 받은 후 세액이 최저한세 미달하면 그 미달분은 감면하지 않고 세금납부 • 중소기업 최저한세 세율은 7%(일반기업은 8~17%)
중복지원의 배제 ☞ p.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자산별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일정한 중복적용 배제 • 동일 과세연도에 일정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중복적용 배제 •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한 세액감면 중복적용 배제 • 동일한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또는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세액 공제 중복 적용 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p.20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다만, 1989.12.31. 이전 사업개시한 기업이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 감면 적용)

2장

범위

2-1 중소기업의 범위 • 20

2-2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 28



범위

2-1

업종, 규모,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정부는 대규모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영 여건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대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러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

◆ ()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업종	관련법령	세부사항
①작물재배업		
②축산업		
③어업		
④광업		
⑤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해당 제품을 자기명으로 제조할 것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⑥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⑦건설업		
⑧도매 및 소매업		
⑨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⑩음식점업		
⑪출판업		
⑫·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⑬방송업		
⑭전기통신업		
⑮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⑯정보서비스업		
⑰연구개발업		
⑱광고업		
⑲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⑳포장 및 충전업		
㉑전문디자인업		

업종	관련법령	세부사항
㉔ 전시 및 행사대행업		
㉕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㉖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㉗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㉘ 직업기술학원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	직업기술학원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업
㉙ 엔지니어링사업	령 제5조제6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활동 :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㉔연구·기획·타당성 조사·설계·분석·계약·구매·조달·시험·감리·시험운전·평가·검사·안전성 검토·관리·매뉴얼 작성·자문·지도·유지 또는 보수 활동, ㉕㉖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㉗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견적(見積)·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활동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㉚ 물류산업	령 제5조제8항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예선업(항만법), 도선업(도선법)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㉛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령 제6조제1항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㉜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령 제54조제1항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의 사업장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의 사업장
㉝ 선박관리업	해운법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함.
㉞ 의료기관운영업	의료법	㉗의원급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㉘조산원 ㉙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을 말함.
㉟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제외)	관광진흥법	여행업 관광숙박업 :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유람선업(일반유람선, 크루즈)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유원시설업 : 종합유원, 일반유원, 기타유원 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극장유희업, 관광식당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편의시설업 : 시내순환관광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업, 관광캐도업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사진업
㊱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 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말함.
㊲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㊳ 전시산업	전시산업발전법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

업종	관련법령	세부사항
㉞에너지절약전문기업운영업	제25조	㉞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㉞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㉞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㉞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㉞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㉞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과 ㉞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함.
㉞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㉞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㉞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㉞사회복지 서비스업		
㉞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4호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함.
㉞무형재산권 임대업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㉞연구개발지원업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2조제4호나목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업종을 말함.
㉞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㉞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㉞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㉞주택임대관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㉞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㉞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말함.
㉞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함.
㉞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겸업)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정

- ◆ ()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의 기업이면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①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②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③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④ 1차 금속 제조업	C24	
⑤ 전기장비 제조업	C28	
⑥ 가구 제조업	C32	
⑦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⑧ 광업	B	
⑨ 식료품 제조업	C10	
⑩ 담배 제조업	C12	
⑪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⑫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⑬ 코르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⑭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⑮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⑯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⑱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⑲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⑳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㉑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D	800억원 이하
㉒ 건설업	F	
㉓ 도매 및 소매업	G	
㉔ 음료 제조업	C11	
㉕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㉖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㉗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㉘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㉙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㉚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㉛ 운수업	H	600억원 이하
㉜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㉝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㉞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㉟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㊱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㊲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㊳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㊴ 금융 및 보험업	K	
㊵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㊶ 교육 서비스업	P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1)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함.

【참고】 업종기준과 규모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매출액 등
①작물재배업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②축산업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③어업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④광업		광업	B	1,000억원 이하
⑤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식료품 제조업	C10	
		담배 제조업	C12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1,000억원 이하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르크·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음료 제조업	C1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0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⑥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800억원 이하
⑦건설업		건설업	F	1,000억원 이하
⑧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G	1,000억원 이하
⑨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운수업	H	800억원 이하
⑩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⑪출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⑫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⑬방송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⑭전기통신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⑮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매출액 등
⑩정보서비스업		·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⑪연구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⑫광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⑬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⑭포장 및 충전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⑮전문디자인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⑯전시 및 행사대행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⑰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억원 이하
⑱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⑳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㉑직업기술학원		교육 서비스업	P	400억원 이하
㉒엔지니어링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㉓물류산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예선업(항만법), 도선업(도선법)	운수업	H	800억원 이하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퍼펙트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00억원 이하
㉔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800억원 이하
㉕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수리(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600억원 이하
㉖선박관리업		운수업	H	800억원 이하
㉗의료기관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원 이하
㉘관광사업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여행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관광유람선업(일반유람선, 크루즈)	운수업	H	800억원 이하
	관광공연장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억원 이하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종합유원, 일반유원, 기타유원 시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억원 이하
	관광극장유흥업, 관광식당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시내순환관광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업, 관광캐도업	운수업	H	800억원 이하
	관광사진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㉙노인복지시설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원 이하
㉚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원 이하
㉛전시산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㉜에너지절약전문기업운영업	㉜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㉜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㉜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㉝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업		교육 서비스업	P	400억원 이하
㉞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㉟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매출액 등
㉑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㉒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원 이하
㉓	일반도시가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D	1000억원 이하
㉔	무형재산권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00억원 이하
㉕	연구개발지원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㉖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수리(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600억원 이하
㉗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교육 서비스업	P	400억원 이하
㉘	도서관·사적지 및 유 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억원 이하
㉙	주택임대관리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00억원 이하
㉚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D	1000억원 이하
㉛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기준을 충족할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²⁾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³⁾인 기업이 아닐 것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이 아닐 것⁴⁾

② 중소기업 적용의 유예기간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①상한기준을 초과하거나 ②규모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이를 유예기간이라 함)는 중소기업으로 보며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 중소기업이 ①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③독립성기준을 충족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④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
- 세법상 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①독립성기준이나 ②규모기준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2)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제2항을 준용.

3)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그 법인의 임원(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이나 개인의 친족(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함.

4)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은 별표2를 참조.

소기업의 범위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①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② 음료 제조업	C11		
③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④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⑤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⑥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⑦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⑧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⑨ 1차 금속 제조업	C24		
⑩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⑪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⑫ 전기장비 제조업	C28		
⑬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⑭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⑮ 가구 제조업	C32		
⑯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80억원 이하
⑰ 농업, 임업 및 어업	A		
⑱ 광업	B		
⑲ 담배 제조업	C12		
⑳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㉑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㉒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㉓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㉕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㉖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㉗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㉘ 건설업	F	50억원 이하	
㉙ 운수업	H		
㉚ 금융 및 보험업	K		
㉛ 도매 및 소매업	G		
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㉝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㉞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㉟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㊱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㊲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㊳ 숙박 및 음식점업	I		10억원 이하
㊴ 교육 서비스업	P		
㊵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㊶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범위 비교 (중소기업기본법 VS 조세특례제한법)

2-2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

중
소
기
업
의
범
위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비교

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업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거된 업종
규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본법 준용
독립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기업 집단에 속하지 아닐 것 자산총액 5천억 + 주식 30% 직·간접소유 +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관계기업은 별표1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본법 준용(다만, 주식의 소유 비율 판단 시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한 경우는 제외)
유예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발생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유예기간 적용제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독립성 기준 미충족 3년간 유예중인 기업이 중소기업규모를 충족하였다가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제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독립성 기준 미충족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 초과
소기업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충족(시행령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본법 준용(시행령제6조)

질문과 답변

- ▶ <질문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 ▶ <세무사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합니다.⁵⁾

- ▶ <질문 2>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 ▶ <세무사 답변> 헌법재판소는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전적 의미와 관련학문의 학문적 성과·통계법 제17조 및 유엔 작성의 국제표준산업분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다른 개별 규정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⁶⁾

- ▶ <질문 3> 농업과 임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인가요?
- ▶ <세무사 답변> 농업과 임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농업 중 작물재배업만을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어 작물재배업만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임업은 비록 평균매출액 등 규모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여도 세법에서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법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6) 헌법재판소 2006.12.28.선고 2005헌바59결정 다수의견.

3장

및 벤처기업 지원

-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31
- 3-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35
- 3-3 창투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37
- 3-4 배당소득 과세특례 • 39
- 3-5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41
- 3-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납부특례 • 43
- 3-7 주식매수선택권에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44
- 3-8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46
- 3-9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48
- 3-10 증권거래세 면제 • 50
- 3-1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52
- 3-12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 55
- 3-13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58
- 3-14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59
- 3-15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61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3-1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 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지원 대상

-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④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18년 12월 31일 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22조 또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

?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한 기업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①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는 창업에 해당
창업으로 인정되는
$$\frac{\text{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text{창업 당시 (토지+감가상각자산)의 가액}} \leq 30\%$$
- ②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재기중소기업의 창업(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5항)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이내에 2018년 12월 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 (요건) 아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시키는 기업에 대해 인증서 발급

구분	내용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관이 투자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지분율10% 이상 투자. 단, 문화콘텐츠 제작자인 경우 7% 이상 투자	벤처캐피탈협회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 보증·대출(결정된 보증대출 가능금액 포함)금액 8,000만원 이상 및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대출 비율이 5%이상일것 (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보증·대출 금액 4,000만원 이상은 총자산 비율 요건적용 제외)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연구개발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하고 연구개발비 5,000만원 이상 •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 단,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비율 적용 제외 • 사업성 평가 우수(경영주 기술능력, 사업성)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 (신청) 벤처인(www.venturein.or.kr) 사이트 통해 온라인 신청

해당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서비스업, 일정한 엔지니어링사업, 일정한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사업,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일정한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지원 내용

- 창업 또는 벤처기업확인 후 5년 소득발생연도부터(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일부부터 4년이내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2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정)**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창업일부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관련 법령

-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5조
-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29조의 2, 시행규칙 제3조의2

적용사례

- 기업현황(A법인-중소기업)
 - ① 법인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 : 2014.1.1
 - ② 2016년 과세표준 : 1,000,000,000
 - ③ 2016년 산출세액 : $200,000,000 \times 10\% + 800,000,000 \times 20\% = 180,000,000$
- **A법인의 감면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 ① 2016년 산출세액 : 180,000,000
 - ② 2016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세액 : $180,000,000 \times 50\% = 90,000,000$
 - ③ 2016년 납부할 세액 : $180,000,000 - 90,000,000 = 90,000,000$

질문과 답변

- ▶ **질문 1)** 사업자였을 때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시에도 창업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1)
- ▶ **<세무사 답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질문 2)**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창업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의 창업일로 부터 3년이 되기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경우에는 창업벤처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을까요?²⁾
- ▶ **〈세무사 답변〉**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사장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2014년 중에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개인 사업을 창업하였습니다. 나사장은 도매업을 운영하던 중에도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개선 아이디어를 연구하여 2016년에는 기존 도매업에서 취급하던 상품보다 품질과 성능이 개선된 제품 생산하는 제조업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사장은 납품업체 사장님으로부터 제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세무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창업당시부터 영위 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창업후 2년이 지난 후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도매)에 다른 업종(제조)를 추가하여 제조업 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제조업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³⁾

1) 서면2답-2313, 2004.11.12.
 2) 법인-2498, 2008.09.17.
 3) 서면법규-731, 2014.07.11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2

창투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창투자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지원 대상

- ①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② 2017년 12월 31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③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투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에서는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지분)의 취득방법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입취득 제외)

- ◆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한 방법
- ◆ 설립된 후 7년이내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 ◆ 설립된 후 7년이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방법
- ◆ 설립된 후 7년이내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한 방법

- ④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지분)의 취득방법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입취득 제외)

- ◆ 상장된 후 2년이내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 ◆ 상장된 후 2년이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방법
- ◆ 상장된 후 2년이내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한 방법

지원 내용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 창투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에 투자하여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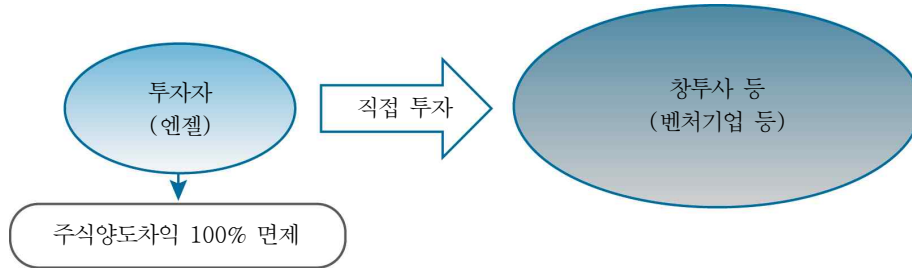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8조의2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창투자 등에 출자자

3-3

창투자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지원 대상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 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③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④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
- ⑤ 소재·부품전문 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⑥ 「증권거래세법」 제 3조 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프리보드를 통한 취득)에 의해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대주주가 아니어야 함)

(지분)의 취득방법

위 ①~⑤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입취득 제외)

- ①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한 방법
- ② 설립된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 ③ 설립된 후 7년 이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방법
- ④ 설립된 후 7년 이내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한 방법

지원 내용

-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면제

절차 및 제출서류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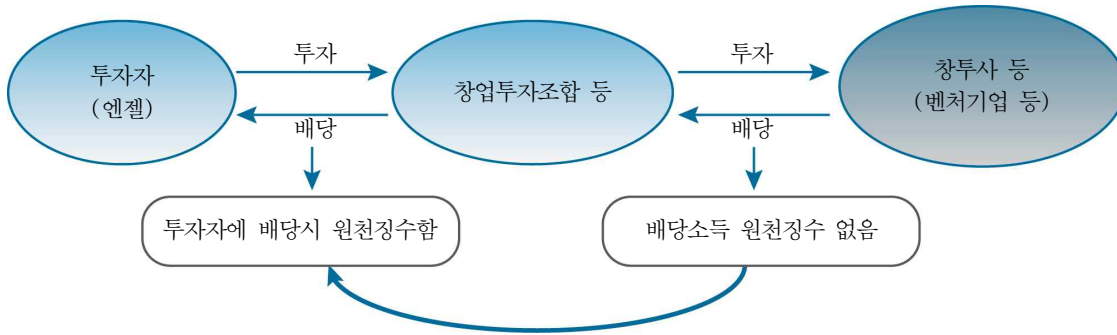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과세특례

3-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지원 대상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 ③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 ④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

배당소득금액은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

지원 내용

-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절차 및 제출서류

- 그 조합이 소득지급시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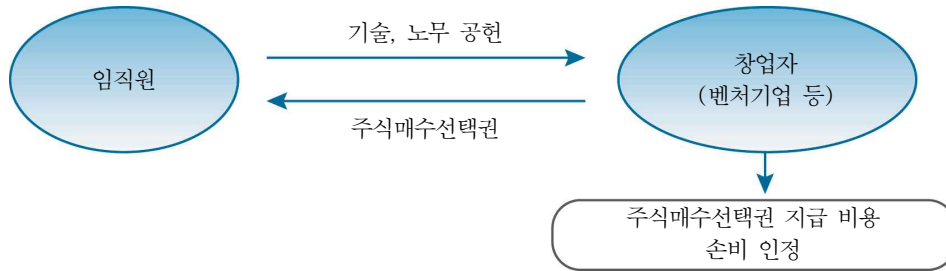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대한 과세특례

3-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부여한 창업자 등

창업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 등을 손비로 인정



지원 대상

- 관련 법률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주권상장법인,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요건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행사가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가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가액 이상이어야 함.

- 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 ②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상법 제340조의 2)

- ◆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원 내용

창업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처리 또는 이익처분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할 경우 손비 인정

-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 ③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절차 및 제출서류

- ① 손익계산서상 비용처리의 경우
표준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
- ② 이익잉여금 처분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손금산입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0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납부특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3-6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가능

지원 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 제외

**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

지원 내용

-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되, 해당 이익에 대한 소득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 가능(분할납부세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연도에 분할납부세액의 25%씩 각각 납부

절차 및 제출서류

-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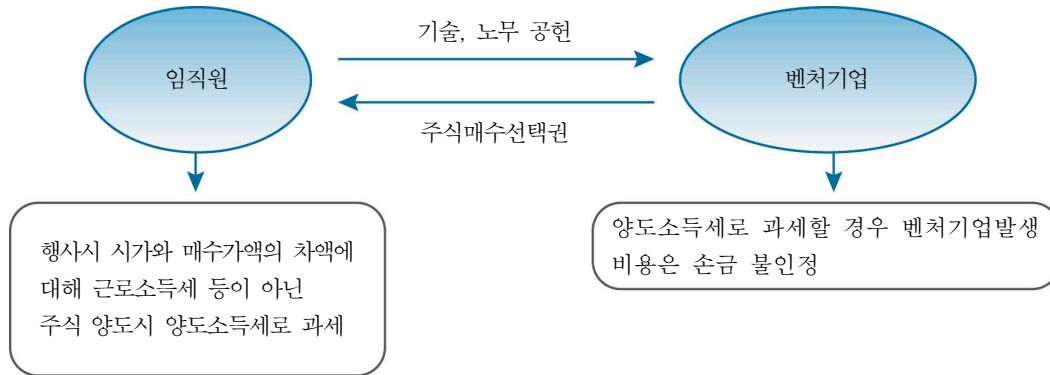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시행령 제14조의 2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3-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부여한 창업자 등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지원 대상

- 벤처기업의 임직원(지배주주, 지분을 10%초과보유자 및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지분을 10%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함)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 ①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 ③ 사망, 정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 ④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연간 행사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일 것

지원 내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퇴직 후 행사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
 - * 다만,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해당 벤처기업 파산,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시 제외)
-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행사시 벤처기업이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 불인정

절차 및 제출서류

- 벤처기업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및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입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및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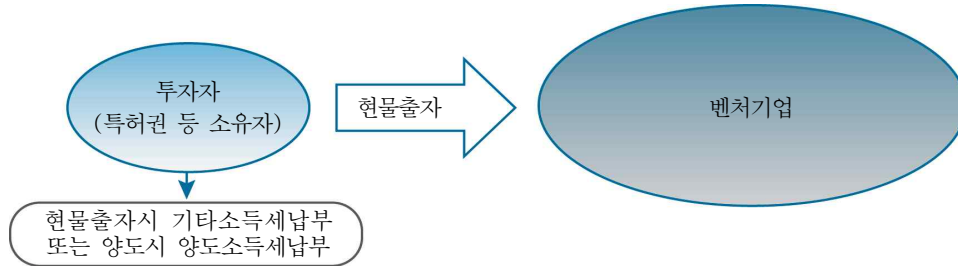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시행령 제14조의3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3-8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등 출자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출자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법 선택 허용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지원 대상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재산권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단, 벤처기업의 지분을 30%초과보유하고 있거나 현물출자로 인해 벤처기업의 지분을 30%초과 보유하게 되는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등 지배주주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특허권등을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시 특허권등 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양도시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시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함(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가능함)

절차 및 제출서류

-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에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자로 인한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 날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특례신청확인서**를 출자자에게 발급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을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교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 출자자는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특례신청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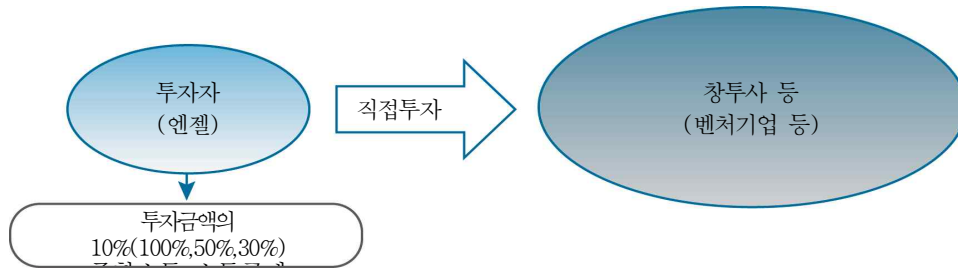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시행령 제14조의4

등에 대한 소득공제

3-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2년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지원 대상

- 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 ②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 ③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부품전문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④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요건

- ◆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들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
- ◆ 조합등록 신청시 1좌당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 총 출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함(또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액 비중이 전체 출자금액의 5%이상이어야 함)
- ◆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 1명과 그 외의 조합원으로 구성.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 ◆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을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
- ◆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개인투자조합의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외에는 탈퇴 또는 지위의 양도 금지
- ◆ 개인이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조합가입을 권유

요건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보험회사 특별계정 제외)으로 계약 기간 3년 이상일 것
- ◆ 통장에 의해 거래되는 것일 것
- ◆ 신탁설정일부터 6월이내에 신탁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지원 내용

- 투자한 금액의 10%(①,②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이하분은 100%, 5천만원이하분은 50%, 5천만원 초과분은 30%,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내에 투자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고서 및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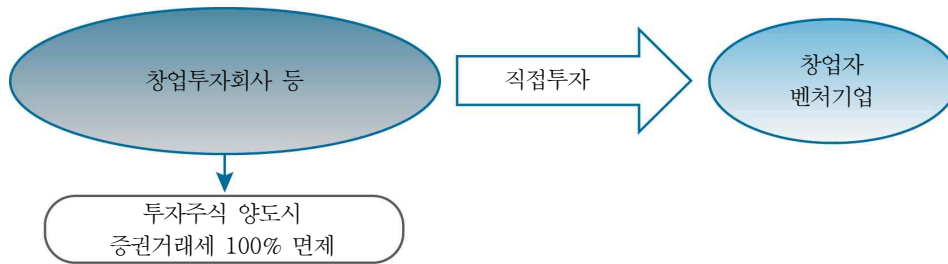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시행령 제14조

면제

3-10

창투사, 창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창투사 등이 창업자 등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지원 대상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이 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③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④ **증권투자목적 설립된 외국법인**이 증권투자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 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 매매체결 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 ⑤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농협(수협, 산림)조합**이 보유하던 주권을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 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 ⑥ 법인세법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합병, 분할, 포괄적 양도, 포괄적 이전·교환**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⑦ **자본확충목적회사**가 같은 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권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 ⑧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주총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주식 양도시의 증권거래세 100% 면제

절차 및 제출서류

-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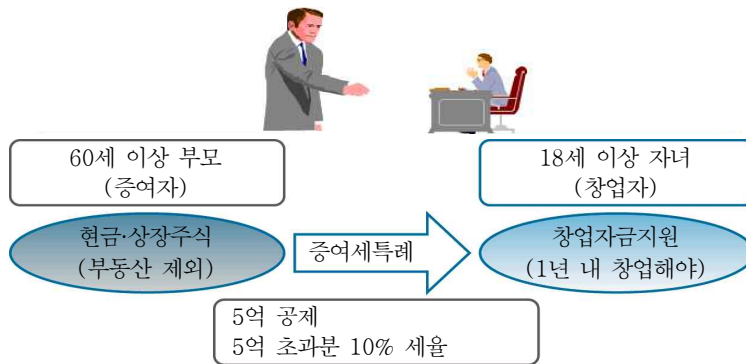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시행령 제115조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11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18세 이상의 거주자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 받을시 5억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 적용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지원 대상

- ①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현금, 주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

사용요건

-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 ◆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한다.
 -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
-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사용명세(30억원 초과시 고용명세서 포함)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가.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제외되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자산

- ◆ 토지 또는 건물
-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 기타 특정주식

지원 내용

-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사용되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정산
- 증여재산한도 : 30억(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50억원) - 한도 초과 시 일반증여

절차 및 제출서류

-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등특례세율적용증여재산신고용) 및 창업자금특례신청서(사용내역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시행령 제27조의 5, 시행규칙 제61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질세상사의 이사장 대표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아들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들이 광고회사 창업을 희망하는 것을 알고 아들에게 창업 자금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사장은 일단 아들에게 1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고, 창업 후 1년 이내에 30억까지 증여를 해줄 예정입니다.

이때 이사장씨는 창업시 1억원과 창업 후 1년 이내에 29억원의 증여에 대해 모두 증여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한 자가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 창업자금을 모두 합해 30억까지 또는 신규로 10명이상 고용한 경우 50억 까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창업을 위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한 재산을 창업자금으로 증여 받는 경우, 30억원(또는 50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장님의 아들은 2.5억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30\text{억원} - 5\text{억원}) \times 10\% = 2.5\text{억원}$$

다만,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창업해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창업자금 전액을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약

증여재산 : 현금 1억원 + 현금 29억원 = 30억원

증여세 : (30억원 - 5억원) × 10% = 2.5억원

사후관리 : 최초 증여 1억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창업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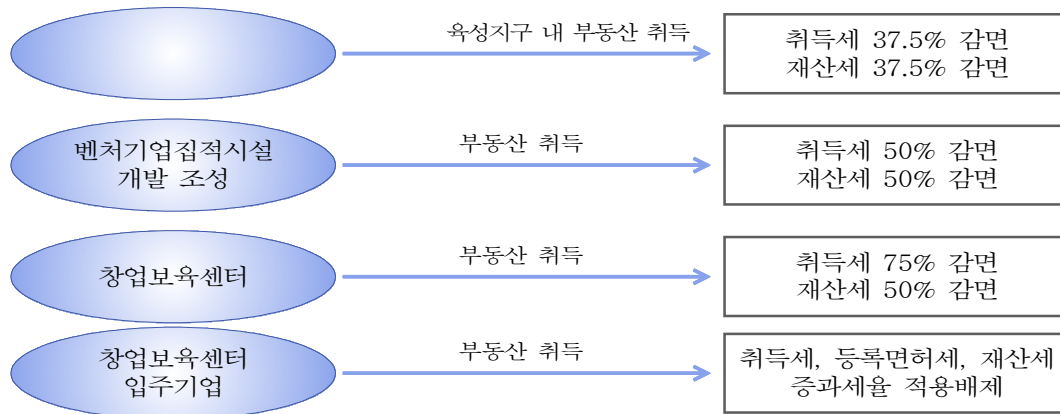
2차 증여 29억과 1차 증여 1억 함께 30억원을 당초 증여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전액 사용** 후 사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3-12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 조성·운영을 위한 부동산 등

-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과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배제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중과세율 적용배제



지원 대상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 제18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 포함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에 한함)**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 **신기술창업지역*에서 일정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
 - **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연합회, 중앙회가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

지원 내용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7.5% 감면** 및 재산세 **37.5% 감면**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취득세와 재산세 추정

- ◆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부동산의 취득 후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에 한함)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 *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 제28조 제2항·제3항, 제111조 제2항

- 신기술창업지역에서 일정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감면 및 3년간 재산세 50% 감면**

취득세와 재산세 추정

-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75% 및 재산세 50% 감면**
-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과세율* 적용배제**
*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 제28조 제2항·제3항, 제111조 제2항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경감
-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2%를 적용

중복 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60조, 제180조,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29조,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3-13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주식을 교환한 벤처기업 등의 주주

비상장 벤처기업 주주가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지원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등(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포함)의 주식을 지분을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지분을 10%이상 보유한 주주에 한정)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여 취득하는 경우

제휴의 요건

- ◆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 ◆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 ◆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 ◆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 주식 교환 및 현물출자는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비특수관계자간 주식교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하도록 계약 체결

지원 내용

-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주식 교환 등을 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교환 후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한 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시행령 제43조의7, 시행규칙 제19조의3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3-14

매각대상기업 주식 양도 후 양도가액 80%이상 재투자한 주주

벤처기업 등 최대주주가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80%이상을 양도 후 6개월 이내에 벤처기업등에 재투자 한 경우 재투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지원 대상

-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80% 이상을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재투자를 한 경우
 -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
 - ** 그 양도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매각대상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 한함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③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2014. 1. 1. 신설)

매각의 요건

- ◆ (과세특례 대상 주주) 매각대상기업(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창업자 또는 발기인으로서 동 기업의 최대주주인 자
- ◆ (기업매각 요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또는 본인 보유 주식의 80%이상 양도
- ◆ (재투자 기한) 기업매각을 위해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 내용

-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 이연 하지 않음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재기중소기업인

3-15

일정한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지원 대상

-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 및 신청일 당시 체납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자
 -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세액
 - ②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0억 미만인 자(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예외)
 - ③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 ④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죄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 ⑤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3년의 기간까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당시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절차 및 제출서류

- 재기중소기업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
 - ①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②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 ③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 ④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사후관리

다음의 사유 발생시 유예를 취소하고 채납처분 진행

- 체납액 납부계획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재창업자금의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6조, 제6조, 시행령 제99의6조, 시행규칙 제45조의2

4장

경영안정 지원

- 4-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64
- 4-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 75
- 4-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79
- 4-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 81
- 4-5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83
- 4-6 접대비의 손금산입 • 84
- 4-7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86
- 4-8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 88
- 4-9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 89



대한 특별세액감면

4-1

중소기업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규모에 따라 법인(소득)세 세액감면

지원 대상

- 다음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여객운송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제외), 광업, 어업, 선박관리업, 축산업, 작물재배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전기통신업, 정보서비스업, 방송업, 광고업, 출판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경비및경호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수탁생산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학원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및의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제외),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전시산업, 하수·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제외), 사회복지서비스업, 무형재산권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도서관·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독서실운영업제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주택임대관리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지원 내용

-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세액감면**

분		감 면 율	
		도·소매업, 의료업	그 외 업종
소기업 ¹⁾	수도권 ²⁾	10%	20%
	수도권 외		30%
중기업	수도권	감면배제	지식기반산업만 ³⁾ 10%
	수도권 외	5%	15%

☞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며 수도권에 있는 본점 등이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사업연도부터 수도권외의 법인에 해당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규모 기준 => “2-1 중소기업 범위” 참조 ☞ p.27

2)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3)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작성업,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보안시스템서비스업

감면 배제 사유

다음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 법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시행령 제122조

질문과 답변

- ▶ **질문 1)**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업장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B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A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A,B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모두 받을 수 없나요?
- ▶ **〈세무사 답변〉**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⁴⁾ 다만, 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두 사업장 모두 감면이 배제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4) 조심2011서2672,2011.09.21.

▶ **질문 2)**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2015년까지 매출액이 소기업 범위를 넘지 않아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아왔습니다. 2016년 매출액이 증가하여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보고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래처 사장의 말을 듣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거래처 사장의 말이 맞는 말인가요?

▶ **〈세무사 답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세액을 감면하나 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으로 전환된 경우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⁵⁾
만약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중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5%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3〉** 수도권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16년 9월말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습니다. 폐업 시 2016년 9월말까지 매출액이 45억원이고, 2016년 10~12월까지 법인의 매출액이 15억원인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세무사 답변〉**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전환하는 경우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매출액은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⁶⁾
도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환산매출액은 각각 60억(45억원*12/9), 60억(15*12/3)이므로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2016년부터 소기업 해당 여부는 매출액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업종별로 매출액 규모도 상이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015년까지는 업종별 종업원수와 매출액 100억원 기준(업종별문)이 모두 충족해야 소기업에 해당 되었습니다.

5) 서면법규 -217, 2013.02.27.

6) 서면법규 -567, 2014.06.02. 서면법규 -568, 2014.06.02.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비교표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매출액 (억원이하)		감면율(%)				
	감면업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중	소	수도권		수도권외		
							중	소	중	소	
일 반 업 종	①작물재배업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	80					
	②축산업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	80					
	③어업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	80					
	④광업		광업	B	1,000	80					
	⑤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	120	-	20	15	30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12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80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				
				전기장비 제조업	C28		120				
				가구 제조업	C32		120				
				식품 제조업	C10		120				
				담배 제조업	C12		8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8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80				
				코르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1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2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0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2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				
				음료 제조업	C11		1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20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80								
⑥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800	30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매출액 (억원이하)		감면율(%)					
	감면업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중	소			수도권의			
							중	소	중	소		
일 반 업 종	⑦건설업		건설업	F	1,000	80						
	⑧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운수업	H	800	80						
	⑨출판업		·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	50						
	⑩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	50						
	⑪광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⑫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⑬포장 및 충전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	30						
	⑭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 공급업포함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	30						
	⑮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	30						
	⑯직업기술학원	직업기술학원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업	교육 서비스업	P	400	10						
	⑰물류산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및창고업, 화물터미널 운영업, 화물운송중개·대리및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및형량서비스업, 예선업(항만법), 도선업(도선법)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운수업	H	800	8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00	30						
	⑱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800	80	-	20	15	30		
	⑲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수리(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600	10						
	⑳선박관리업		운수업	H	800	80						
	㉑관광사업 (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제외)	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일반유람선, 크루즈)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 일반유원, 기타 유원시설업 관광극장유희업, 관광식당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시내순환관광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캐도업 관광사진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	30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	10						
			운수업	H	800	80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	3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	30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	30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	10							
운수업			H	800	8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매출액 (억원이하)		감면율(%)				
	감면업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중	소	수도권		외		
							중	소	중	소	
일 반 업 종	㉒노인복지시설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	10					
	㉓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	10					
	㉔전시산업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	30					
	㉕에너지절약전문기업운영업	㉗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㉘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	30					
			㉚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㉞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	30					
	㉟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	30					
	㊱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㊲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	10					
	㊳무형재산권 임대업	지식재산임대 한정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00	30					
	㊴연구개발지원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㊵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수리(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600	10					
	㊶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교육 서비스업	P	400	10					
	㊷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독서실 운영업 제외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	30					
	㊸주택임대관리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00	30					
	㊹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D	1,000	120					
도 매 등	①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G	1,000	50					
②의료기관운영업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	10		10	5	10		
지 식 기 반 산 업	①엔지니어링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②전기통신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	50					
	③연구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④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및관리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	50					
	⑤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	50	10	20	15	30	
	⑥전문디자인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⑦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	50					
	⑧광고업 중 광고물작성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	30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매출액 (억원이하)		감면율(%)			
	감면업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중	소	수도권외		수도권	
							중	소	중	소
지식기반산업	⑨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	50	10	20	15	30
	⑩방송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	50				
	⑪정보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	50				
	⑫서적,잡지기타인쇄물출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	50				
	⑬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	30				
	⑭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	30				

경영안정 지원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정직원 채용기

주식회사 절세의 재무부서 인턴사원 나인틴은 업무과약을 위해 2014년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검토 중 2014년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여 나과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과장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13년까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왔고 세액감면 중복배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이 2013년으로 완료되어 2014년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적용받지 못했음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던 세무사에게 관련 내역을 상담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미 신고한 감면내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절세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고 인턴사원이었던 나인틴은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주식회사 절세는 2016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합니다. 세액감면 신청서 작성요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현황(주식회사 절세 - 중기업, 제조업/임대업, 수도권 외 소재)
 - ① 2016년 과세표준 : 제조업 1,400,000,000, 부동산임대업 200,000,000
 - ② 2016년 산출세액 : 200,000,000 × 10% + 1,400,000,000 × 20% = 300,000,000
- 감면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 ① 2016년 산출세액 : 300,000,000
 - ② 2016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300,000,000 × 87.5% × 15% = 39,375,000
 - ③ 2016년 납부할 세액 : 300,000,000 - 39,375,000 = 260,625,000

<작성요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사업연도	2016.01.01.	소 득 구 분 계 산 서	법 인 명	주식회사 절세	
	~ 2016.12.31.		사 업 자 등록번호	000-00-00000	
과 목	합 계	감 면 분		기 타 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	비율
⋮	1,600,000,000	금액	비율		
과세표준	1,600,000,000	1,400,000,000	87.5%	200,000,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사업연도	2016.01.01.	공 제 감 면 세 액 계 산 서 (2)	법 인 명	주식회사 절세	
	~ 2016.12.31.		사 업 자 등록번호	000-00-00000	
①구 분	근거법 조 항	②계산명세	③감면대상 세 액	④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⑤감면세액 (③-④)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제7조	$300,000,000 \times \frac{1,400,000,000}{1,600,000,000} \times 15\%$	39,375,000	-	39,375,000
합 계			39,375,000	-	39,375,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업연도	2016.01.0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 2016.12.31.		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내역

① 구	분	코드	②감면 후 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 후 세액
⑫	과세표준금액(㉑ + ㉒)	25	1,600,000,000	1,600,000,000		1,600,000,000
⑬	세율	19	20%	7%		20%
⑭	산출세액	20	300,000,000	112,000,000		300,000,000
⑮	감면세액	21	39,375,000			39,375,000
⑯	세액공제	22				
⑰	차감세액(⑭-⑮-⑯)	23	260,625,000			260,625,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사업연도	2016.01.0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 2016.12.31.		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1. 최저한세 적용제의 공제감면세액

①구	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대상세액	④감면(공제)세액
세액감면					
	소계				
세액공제					
	소계				
합계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제2쪽)

① 구	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대상세액	④감면세액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39,375,000	39,375,000
	소계				39,375,000	39,375,000

① 구	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⑤전기이월액	⑥당기발생액	⑦공제세액
세액공제						
	소계		49			
합계			50			39,375,000
공제감면세액 총계			51			39,375,000

·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4-2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지원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⁷⁾

지원 내용

- 공제부금 납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text{소득공제액} = \text{Min}(\text{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 300\text{만원})$$

절세효과 - 연 60~300만원(월5~25만원) 납입기준

과세표준	세율(지방소득세포함)	절세효과
1,200만원 이하	6.6%	39,600원 ~ 198,000원
1,200만원 ~ 4,600만원	16.5%	99,000원 ~ 495,000원
4,600만원 ~ 8,800만원	26.4%	158,400원 ~ 792,000원
8,800만원 ~ 1억5천만원	38.5%	231,000원 ~ 1,155,000원
1억5천만원 초과	41.8%	250,800원 ~ 1,254,000원

유의사항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실제로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봄
- 소득을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⁸⁾
- 정당한 사유(폐업, 해외이주 등)없이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7) 2016년 이전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 가능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시 소득공제 불가능)

8) 2016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

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의 경우에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시행령 제80조의3

질문과 답변

▶ **질문 1)** 당시부터 지금까지 소기업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추후 연평균매출액의 증가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 **〈세무사 답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입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매출액이 증가하여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2〉** 본점 이외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연평균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세무사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연평균매출액을 산정하나 법인의 경우는 법인 단위로 연평균매출액을 산정합니다.

▶ **〈질문 3〉** A법인의 대표자이며, B법인의 대표자입니다. 급여는 각각 4천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세무사 답변〉** 두 법인 중 하나를 정하여 가입을 할 수 있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을 하실 경우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은 개인의 총급여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어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질문 4)**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이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이럴 경우 두 사업장 모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세무사 답변〉** 두 사업장 모두 가입할 수 없으며 그 중 하나를 정하여 가입을 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사업장의 연평균매출액과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을 검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5〉**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8명이고, 연평균매출액은 15억 원입니다. 2016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세무사 답변〉** 음식점의 경우 연평균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가능하지만 2015년말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10명이하일 경우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질문 6〉** 병원의 대표자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세무사 답변〉**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연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일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 달라지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기존 가입자의 경우 공제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나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200만원, 기타소득금액: 500만원일 경우(공제부금 300만원 납입)

- 2016년 이전 가입자 소득공제액: 300만원 (종합소득금액: 700만원 한도)
- 2016년 이후 가입자 소득공제액: 200만원 (사업소득금액: 200만원 한도)

● 기존에 가입한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가입하는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존 가입자의 경우 폐업 등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 목 적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 가입대상

- ①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 ② 비영리법인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불가
- ③ 사업자등록 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⁹⁾

<업종별 15년말 상시근로자 수 및 연평균 매출액>

업종	상시근로자 수	연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50명	12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수도사업	10명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50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10명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50명	50억원 이하
도, 소매업	10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50명	30억원 이하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10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50명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10명	

◆ 가입제한 대상

- ①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 ②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납입기간 :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 납입부금

- ① 월 5만원 ~ 100만원(1만원 단위) ② 월납 또는 분기납 가능

◆ 공제사유

- ① 개인사업자 폐업 ② 법인사업자 폐업, 해산 ③ 가입자 사망 ④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⑤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지급청구

◆ 문의처 : <http://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 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

9) 다만, 2015년말 기준으로 종전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03.31.일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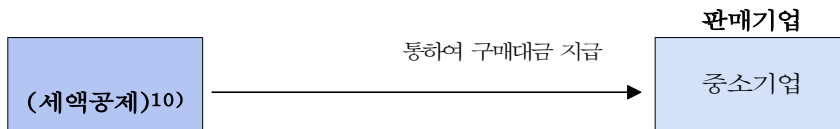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4-3

중소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지원 대상



-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¹¹⁾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 전년대비 현금성결제 금액의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 ◆ 전년대비 약속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

- ◆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 ◆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 ◆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¹²⁾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 ◆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10)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11)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정상적(經常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제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12)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

금액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지급하는 금액

- ◆ 지급(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신용카드업자)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의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loan)제도” 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작성일 이전에는 상환청구권을 판매기업에 행사하고 이후에는 상환청구권을 구매기업에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 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지원 내용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X 0.2%의 세액공제

- 16~60일 이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X 0.1%의 세액공제

- 한도 : 법인(소득)세의 10%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시행령 제6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시행령 제6조의2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4-4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성실사업자 등에 대하여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적용

지원 대상

-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
- ◆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할 것
 - ◆ 수입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수입금액의 90%를 초과할 것
 -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전 3년이상 사업을 경영할 것
 - ◆ 소득세 신고기한 현재 국세채납, 직전 3년간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 등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이 없고, 직전 3년의 세무조사결과 과소신고금액이 10%미만일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사업자¹³⁾

-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나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 ◆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
-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이상을 사용

- ②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¹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란?

당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의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¹⁵⁾

업종	수입금액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현금영수증의무발생업종	5억원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환경복원업, 건설업(일부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
농업·임업및어업, 광업, 도매및소매업, 부동산매매업과 그 외의 사업	20억원

13)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8

14)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지원 내용

-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 **월세액**의 일정 금액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¹⁶⁾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의료비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 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교육비 공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시행령 제117조의3, 시행규칙 제52조의2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3,9항,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용어 해설

- **세액공제** :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

15)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16)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만 해당,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제외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4-5

성실신고확¹⁷인대상사업자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

지원 대상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¹⁷⁾

지원 내용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100만원한도)¹⁸⁾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
-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

유의사항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전액추징
-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세액공제 배제

절차 및 제출서류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 시행령 제121조의 6
- 소득세법 제70조의 2, 시행령 제133조

17) “4-4 성실사업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참조
 18)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포함)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손금산입

4-6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

지원 내용

- 2016년 12월 31일까지 접대비 한도를 우대(1,800만원->2,400만원)하여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

접대비 한도 (①+②)

	중소기업	대기업
①	2,400만원	1,200만원
②	수입금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초과)*0.1%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초과)*0.03%

문화접대비 한도

-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 = Min(①, ②)
- ① 문화접대비지출액
- ②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3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시행령 제130조

경영안정 지원

?

접대비·교제비·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그 매출처·매입처·기타 사업에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향응·위안·선물의 제공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

문화접대비란 ?

-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 ◆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 ◆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해 해당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 ◆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4-7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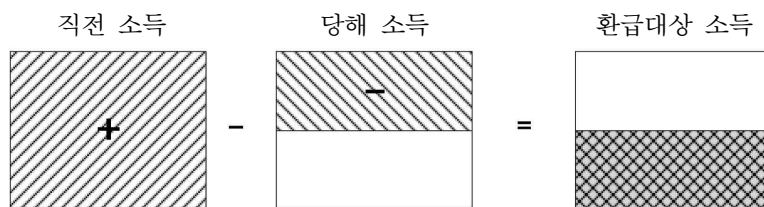
중소기업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연도 사업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법인(소득)세 환급

지원 대상

- 법인(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소득)세를 신고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¹⁹⁾**

지원 내용

- 당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소득)세 한도 내에서 환급
-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부분만 환급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2조, 시행령 제110조
- 소득세법 제85조의2, 시행령 제149조의2

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용어 해설

- 결손금 : 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적용사례

- 기업현황(A법인-중소기업)
 - ① 법인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 : 2008.1.1
 - ② 2016년(제9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결손금) : △50,000,000
 - ③ 2015년(제8기) 법인세 신고내용
 - Ⓐ 과세표준 : 120,000,000
 - Ⓑ 산출세액 : 12,000,000
 -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8,000,000
- A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세액은?
 - ① 소급공제로 인한 2015년 산출세액의 감소액
$$\begin{aligned} & 2015\text{년 산출세액} - \{(2015\text{년 과세표준} - \text{소급공제 결손금}) \times 2015\text{년 법인세율}\} \\ & = 12,000,000 - \{(120,000,000 - 50,000,000) \times 10\%\} \\ & = 5,000,000 \end{aligned}$$
 - ② 2016년 환급한도액 : $12,000,000 - 8,000,000 = 4,000,000$
 - ③ 2016년 환급신청액 : $\text{Min} [\text{①}, \text{②}] = 4,000,000$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4-8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

-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 주주나 소비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경영안정
지원

지원 내용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감면 배제 사유

- 법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시행령 제79조의7

사회적기업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http://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기업 지원 ⇒ 금융및세제지원)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4-9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5년간 법인(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표준사업장이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중심의 직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의 친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의 4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장²⁰⁾

- ◆ **(요건)**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장

구 분	내 용		
고용인원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고용비율	•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다음의 기준 이상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상시근로자수의 30%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수의 5% + 20명	
시 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춘 것		
임 금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지원 내용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2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감면 배제 사유

- 법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시행령 제79조의7

장애인 표준사업장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http://www.kead.or.kr>
(사업주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제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콜센터 : 1588-1519

5장

투자촉진 지원

- 5-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92
- 5-2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95
- 5-3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99
- 5-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101
- 5-5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103
- 5-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104
- 5-7 환경보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106
- 5-8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107



5-1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지원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운휴중인 것 제외)
 - ②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¹⁾
 - ③ 정보시스템²⁾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등 사업용자산

-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조특칙 별표 1의 자산 제외)
-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 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와 선박
- ◆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 ◆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사, 급여, 회계등의 지원 소프트웨어,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기본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제외)
- ◆ 위 사업용 자산에 해당 하더라도 운휴중에 있는 것은 제외

해당 업종³⁾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투자
촉진
지원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2)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6호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지원 내용

-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시행령 제2조,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4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주식회사 절세의 나대표 사장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중소 출판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창업 당시 구입했던 인쇄기가 고장이 잦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늘어나는 디지털 출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신식 기계설비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직원들의 요구에 골머리를 앓던 나 사장은 세무사에게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고 기계구입 시 절세방안이 없는지 자문을 구하였다.

세무사 답변

출판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신규로 사업용 인쇄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시며, 아래와 같은 기계장치 투자를 하는 경우 240만원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2016년 기계장치 투자액(사업용 자산 해당) : 100,000,000원
 - 디지털 신기계 구입비 : 80,000,000원
 - 중고 인쇄기계 구입비 : 20,000,000원
-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액 :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중고자산 투자 제외) 투자액의 3%

$$80,000,000\text{원} \times 3\% = 2,400,000\text{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2015.03.13 개정)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나 대 표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동 *** (전화번호:)			
② 과세연도		2016 년 01월 01일부터 2016 년 12월 31일까지	
③ 신청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5항	131
⑨	공제율	3%	2,400,000
⑩	대상세액	2,400,000	2,400,000
⑪	공제세액	2,400,000	2,400,000
⑬ 세액공제 합계		1A3	2,400,000

투자
촉진
지원

질문과 답변

▶ **질문** > 있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올해 초 인사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물류/인테리어/개발/가맹과 같은 영업업무를 포함하는 ERP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

▶ **<세무사 답변>**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소프트웨어의 용도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물류, 인테리어, 개발, 가맹 등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의 사용용도 및 구축비용(투자금액)이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ERP시스템 구축비용을 인사, 재무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과 물류, 인테리어 등 영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분하여 구입하고 계상하여야 합니다.

4) 서면법령해석법인2014-21121(2015.04.22)

세액공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내국인

5-2

상시근로자를 유지하는 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지원대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지원 대상

-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정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중고품, 리스에 의한 투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 제외)를 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단,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적용하되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고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하여 적용)

대상인 일정한 사업(해당업종)이란?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그 밖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포장 및 충전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 한정),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물류산업·항공운수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전시산업

해당하는 시설의 범위

- ◆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비
- ◆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 ◆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무선설비
-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 제외)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 ◆ 대상사업자가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연장(영화상영관 제외), 과학관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지원 내용

-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①+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① 기본공제금액 : **투자금액 × 3%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기업⁵⁾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금액 ×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2%

② 추가공제금액 :

구 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일반 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	투자금액의 4%	투자금액의 3%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	투자금액의 5%	투자금액의 4%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제외한 대상사업 : 투자금액의 추가 1% 가산

5)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는 기업

- 추가공제금액 한도 : (① + ② + ③) - ④
 - ①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⁶⁾의 졸업생 수 × 2,000만원
 - ② 청년근로자등의 수⁷⁾ × 1,500만원
 - ③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①의 졸업생 수 - ②의 청년근로자등의 수) × 1,000만원
 - ④ 해당 과세연도에 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5년 이내의 금액으로서 이월공제 받은 금액

유의 사항

- 세액공제 후 2년간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중간예납세액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함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6)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일정한 학교
7)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근로자(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연령에서 차감·6년한도),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질문과 답변

▶ **질문 1)** 나사장은 해당 사업을 2016.7.1. 주식회사 절세로 법인전환하였는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2015.1.1.~12.31.)의 상시근로자수는 36.75명이고,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법인전환일전일까지(2016.1.1.~2016.6.30.)의 상시근로자수는 43.5명이며, 법인전환일(2016.7.1.)의 상시근로자수는 46명이었습니다. 2016년 법인전환과 함께 큰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입하였는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⁸⁾

▶ **〈세무사 답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질문 2〉**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인테리어시설 및 진열대, 가구등 제반 설비를 새로 취득하여 리뉴얼하였는바 이와 같은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⁹⁾

▶ **〈세무사 답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품의 범위는 동 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절세와 같이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매장을 구성하는 쟁점시설 중 우드집기류, 행거류, 피팅룸등 의류소매업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비품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외 컴퓨터 장비, 조명, 보안장치, 출입구 등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물품으로 소매업 매출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항상 요건 검토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투
자
촉
진
지
원

8) 서면법규-599 (2014.06.17)
9) 조심2015서671 (2015.06.23)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내국인

5-3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지원 대상

- 2017년 12월 31일까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내국인
 - ①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 ②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 ③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④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⑤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⑥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 타인이 보유한 위 ③, ④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투자금액(이용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 * 일반기업의 경우 3% 세액공제
 - *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는 기업)의 경우 5% 세액공제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2조

질문과 답변

▶ **질문 1)** 주식회사 절세는 올해 초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시설인 설비장치 2건을 신품 8천만원, 중고품 1천만원에 구입하고자 하는데 감면 받을수 있는 세제 혜택은 어떤게 있을까요? 2016년 예상 과세표준은 5억원입니다.

▶ **〈세무사 답변〉**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성향상 설비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예상 과세표준 : 500,000,000

2016년 예상 산출세액 : $200,000,000 \times 10\% + 300,000,000 \times 20\% = 80,000,000$

2016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80,000,000 \times 7\% = 5,600,000$

2016년 납부할 세액 : $80,000,000 - 5,600,000 = 74,400,000$ 으로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여 추가적으로 560만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5-4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지원 대상

- 201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내국인**
 -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 포함) 등
 -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지원 내용

- 투자금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 * 일반기업의 경우 1% 세액공제
 - *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는 기업)의 경우 3% 세액공제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시행령 제22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의2

질문과 답변

▶ **질문 1)** 절세는 경북 안동시 소재 건물을 신축하면서 축열식 히트펌프¹⁰⁾를 설치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축냉설비 설치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축열식 히트펌프’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요? ¹¹⁾

▶ **〈세무사 답변〉** 축열식 냉난방(겸용)시설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하므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 축열식 히트펌프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의 판단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므로 매 투자자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질문 2〉** 태양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기 생산을 위해 대형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한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¹²⁾

▶ **〈세무사 답변〉**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법인 제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0) ‘축열식 히트펌프’는 심야에 냉온수를 축열조에 생산·저장하였다가 주간에 냉난방하는 전기절감 냉난방시스템임

11) 서면법령해석법인2015-1109 (2015.12.14)

12) 서면법인2015-153(2015.05.29)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5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지원 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하는 **내국인**
 - ①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 ②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제외)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 ③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 ④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직업생활 편의시설
 - ⑤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⑥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지원 내용

- **취득금액의 7%**(위 ①, ②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과 ③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감면 세액 추정

-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시행령 제94조, 시행규칙 제43조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5-6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 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 해외진출 후 국내복귀 중소기업이 자본재 수입시 경우 관세 감면

지원 대상

- ①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여 국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로
 -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 *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것
-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인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지원 내용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① 국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하는 경우(지원대상 ①에 해당)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세액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
 - ② 국외사업장의 국내 복귀하는 경우(지원대상 ②에 해당)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관세의 감면

위 지원대상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100%(50%) 감면

감면 세액 추정

-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쇄 또는 해산한 경우,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등 추정
- 감면받은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국내 사업장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수입 신고수리일부터 3년 이내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관세 추정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국내복귀기업**선정**확인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기타 관세청장 고시 서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4, 제118조의 2, 시행령 제104조의 21, 제115조의 2

대한 세액공제

5-7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지원 대상

- 201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환경보전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내국인**
 - 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 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 ②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
 - ③ 온실가스감축시설

지원 내용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 일반기업의 경우 3% 세액공제
 - *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는 기업)의 경우 5% 세액공제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시행령 제22조의3, 시행규칙 제13조의3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내국인

5-8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지원 대상

- 2017년 12월 31일까지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다음의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내국인**
 - ① 제조업,물류산업,우수체인사업자,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유통합리화시설
 -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 ④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
 - 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 ⑥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처리·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
 - ⑦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
 - ⑧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채광설비 등의 설비
 - 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 ⑩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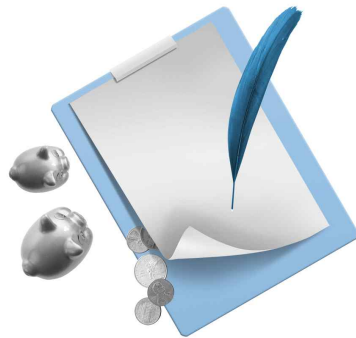
- **투자금액의 7%**(기술유출방지시설비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 * 일반기업의 경우 3% 세액공제
 - *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는 기업)의 경우 5% 세액공제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3조



6장

연구·인력개발 지원

- 6-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110
- 6-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116
- 6-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119
- 6-4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21
- 6-5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123
- 6-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125
- 6-7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127
- 6-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129
- 6-9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 130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6-1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지원 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모든 업종 가능)

· 인력개발비란 ?

- ◆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 별표7, 별표8에 나열된 비용
- ◆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함

지원 내용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②+③)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①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 ㉡ 중에서 선택한 금액

- ㉠ 총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25%
- ㉡ 증가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50%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40%)

* 2013년 : 소급 3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의 연평균 금액
2014년 : 소급 2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의 연평균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을 적용

- ②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 30%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20%)
- ③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30%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20%)

유의 사항

- ◆ 다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 중복공제 가능
-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 미공제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 연구개발비 중 연구관리직원에 관한 인건비는 제외

절차 및 제출서류

- 신성장 동력연구개발비와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여야 함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 2

용어해설

- 구분경리 :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자산과 부채 및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세법상 특정사업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거나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소득공제·세액감면·준비금손금산입등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 비교

공제율		중소기업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후 1~3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후 4~5년	그 외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일반R&D 비용	당해연도 투자금액	25%	15%	10%	8%	3% 한도로 함**
	초과금액	50%	40%	40%	40%	40%
신성장 등 R&D비용		30%	20%	20%	20%	20%

* :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

**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50%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주식회사 절세의 대표이사 나사장은 자동차 주요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10년째 안정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최근 나사장은 경쟁사의 제품 기술 향상으로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성장세가 둔화되고, 예전같이 마진을 못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걱정입니다. 지금의 가격경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제품개발에 착수하기 위해 연구전담요원을 선발하여 신제품 개발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연구부서에서 신제품 개발 성공으로 급격한 수입금액 증가가 예상되었지만, 신제품 개발에 소요된 연구부서의 인건비 등의 추가 지출로 회사 자금 상황에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절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2년) 6,000,000원 (2013년) 17,000,000원 (2014년) 25,000,000원 (2015년) 30,000,000원
- (2016년) 40,000,000원

이때 나사장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문제로 절세방안이 없는지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주식회사 절세를 검토해본 결과 **연구전담부서** 등에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등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재 주식회사 절세가 법인세 확정신고시 **1천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근거

2016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 : $\text{Max}[\text{㉠}, \text{㉡}] = 10,000,000\text{원}$

㉠ 총액발생기준 : $40,000,000 \times 25\% = 10,000,000\text{원}$

㉡ 증가액발생기준 : $(40,000,000\text{원} - 27,500,000\text{원}^*) \times 50\% = 6,250,000\text{원}$

$^*(25,000,000\text{원} + 30,000,000\text{원}) / 2 = 27,500,000\text{원}$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중소기업의 상무이사인 나상무는 연구개발부서에서 연구개발업무를 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및 경쟁회사의 직원들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접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상무는 연구개발부서에서 연구개발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 관청에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면서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나상무는 **세액공제를 부인당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많은 중소기업이 세액을 공제받는 규정이지만, 상무이사등이 접대업무를 겸하는 경우나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세액 불공제되는 사유가 종종 발생합니다. 나상무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타업무를 겸직하였기 때문에 세액공제 부인 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업무전담부서의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지원인력이라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¹⁾

☞ 연구개발부서의 상무이사가 **법인카드로 거래처에 접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법인카드 접대비 사용내역에 다수의 거래처에 접대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²⁾

☞ 연구요원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³⁾

1) 조심 2012서523, 2012.8.6., 대법원 2011.6.24. 선고2011두6844 판결
2) 조심2014중3244 (2014.08.11.)
3) 서면2담-2279, 2006.11.0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2015.03.13 개정)

세액공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신청인	①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00.00.00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대전 유성구 장대동 00-0 (전화번호: 000-0000)					
②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③ 신청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적용제외)		제9조제9항	166	25%	10,000,000	10,000,000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개정 2015.3.13>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2쪽 중 제1쪽)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00.00.00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00-0 (전화번호: 000-0000)						
②		2016 1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③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계정 과목	구 분	자재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개발비		2	30,000,000	12	10,000,000		
합 계		2	⑥ 30,000,000	12	⑦ 10,000,000		⑧
						총 계	
						40,000,000	
합 계			⑨	⑩	⑪	⑫	⑬ 40,000,000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⑭ 해당과세연도 발생액	⑮ 직전4년발생액 (16+17+18+19)	'14.01.01~'14.12.31 (16)(직전 1년)	'13.01.01~'13.12.31 (17)(직전 2년)	'12.01.01~'11.12.31 (18)(직전 3년)	'11.01.01~'11.12.31 (19)(직전 4년)
40,000,000	78,000,000	30,000,000	25,000,000	17,000,000	6,000,000
⑳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15/4)	19,500,000	㉑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16+17+18)/3	24,000,000	㉒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16+17)/2	27,500,000
㉓ 증가발생액 (2014년(14-㉑), 2015년(14-㉒), 2016년 이후 (14-16))					12,500,000

연구·인력개발 지원

4 공제세액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중소기업	㉔ 대상금액(=㉓) 40,000,000	㉕ 공 제 율 25 %		㉖ 공제세액 10,000,000
	:				
증가발생금액 공제 (직전 4년간 연구·인력 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①⑥<②⑩ 경우 공제 제외)		④④ 대상금액 12,500,000	④① 공제율 50 %	④② 공제세액 6,250,000	* 공제율 - 중소기업 : 50% - 중소기업 외의 기업 : 40%
④③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㉖과 ④② 중 선택)				10,000,000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㉓)과 ④② 중 선택)				
	중견기업(㉔)와 ④② 중 선택)				
	일반기업(㉓)와 ④② 중 선택)				

(2쪽 중 제2쪽)

5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관련)

구분	정부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6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관리직원		기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6-2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한 내국인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

지원 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하는 내국인**

관련 출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일정한 법률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구분경리 사례(법인세법 제113조)

-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을 합병(연결모 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지원 내용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

익금 산입

손금산입한 금액은 다음에 방법에 따라 익금산입

-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시 익금 산입
-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① 경우는 익금에 산입하거나 처분시 남은 잔액 익금에 산입
 - ② 그 외의 자산의 경우 자산의 처분시 일시 익금 산입

사후관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일시 익금 산입(합병, 분할의 경우 제외)

-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시행령 제9조의 2, 시행규칙 제7조의 3

용어 해설

- 손금산입 :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을 말한다(법인세법 제19조). 손금산입이란 손금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이다.
- 익금산입 :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15조). 다시 말하면, 익금이란 법인세법상 수입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익금산입이란 익금으로 인정을 한다는 의미이다.
- 감가상각 : 유형·무형자산의 공정한 비용배분을 통하여 각 회계기간의 손익을 올바르게 계산하고 이에 따라 진실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를 각 기간에 배분하는 절차를 말한다.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금년 신소재의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구분 경리하여 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소재 프로젝트를 위해 바쁘게 일했던 나사장은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망각하였고, 이를 차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출연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나사장은 다음과 같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미제출과 관련하여 세법상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무사 답변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의무는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나사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불과하므로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야 합니다.⁴⁾

4) 2003두773, 2004.11.12.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6-3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 신기술기업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 신기술의 기업화 관련 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지원 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내국인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

- ◆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연구시험용 시설 :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아래의 연구시험용시설

-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직업훈련용 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아래의 자산

-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 사업용자산

- 특허 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최초로 기업화한 것
- 「산업기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에 한정)이 개발한 기술성과를 최초로 기업화한 것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고안을 최초로 기업화한 것
- 「저작권법」에 의하여 등록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최초로 기업화한 것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최초로 기업화한 것

지원 내용

- **투자금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완료한 연도에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 일반기업의 경우 1% 세액공제
 - **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부합하는 기업)의 경우 3% 세액공제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연도마다 적용 가능**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시행령 제3조, 제10조, 시행규칙 제8조

연구·인력개발 지원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2007년 1월 1일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나사장은 2016년 50,000,000원의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였습니다. 세액공제 없이 법인세를 계산해보니 산출세액이 8천만원이었고, 나사장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 알고 싶었습니다. 나사장의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액과 납부세액은 얼마일까요?

세무사 답변

“나사장님은 3백만원이 세액공제되어 세액공제 후 납부할 세액은 7천7백만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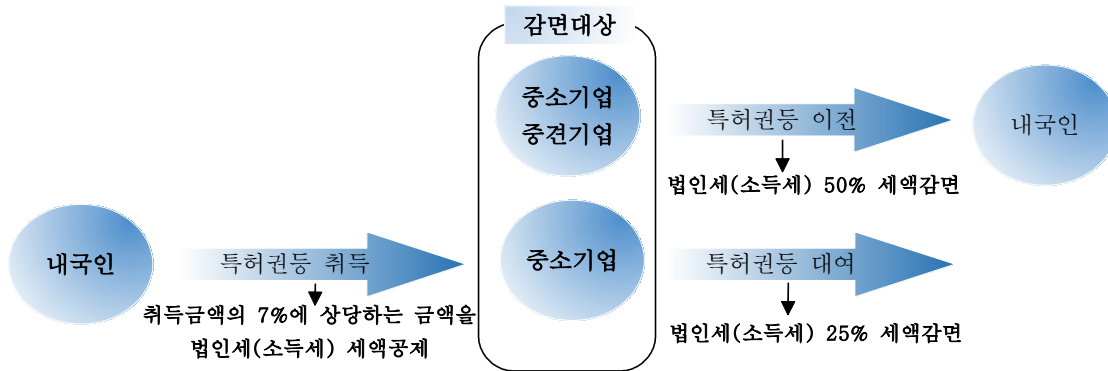
- ① 2016년 산출세액 : 80,000,000
- ② 2016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50,000,000 \times 6\% = 3,000,000$
- ③ 2016년 납부할 세액 : $80,000,000 - 3,000,000 = 77,000,000$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6-4

특허권 등을 취득한 중소기업 등

특허권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지원 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일정한 기술비법, 일정한 기술**을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부합하는 기업
-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일정한 기술비법, 일정한 기술**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중소기업**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는 **중소기업**
 - * 최초로 설정등록 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기술비법

기술비법이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

- ☞ 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외

일정한 기술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지원 내용

-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 취득 : 취득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다만,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의 10% 한도로 함.
-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 감면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와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6-5

연구개발특구에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법인세(소득세)세액감면

지원 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 「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

- ◆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종자,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종묘생산업 포함)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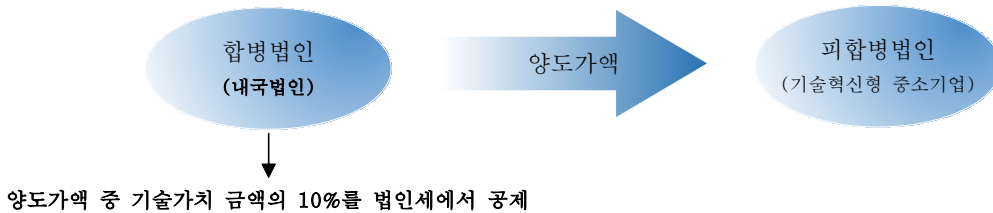
-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내국법인

6-6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지원 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일 경우
 -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②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3배 이상일 것
 - ③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받은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20%미만일 것(합병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④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할 것

중소기업이란?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기술가치 금액이란?(금액 중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으로 함)

- ◆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 ◆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 1.3)

지원 내용

-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사후 관리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

- ①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합병법인의 파산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 받은 자산의 처분 제외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시행령 제11조의3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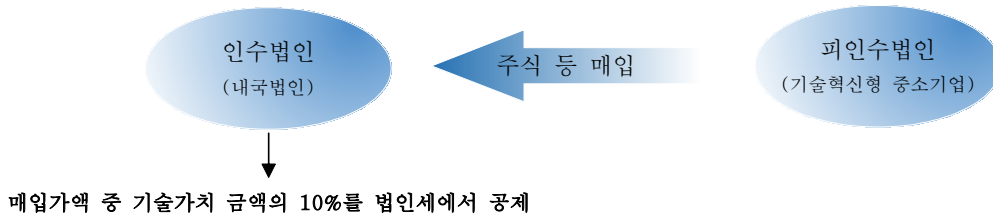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6-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내국법인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



지원 대상

- 내국법인(인수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하는 경우
 - ① 인수법인이 주식 등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 ②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③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 등의 매입가액이 다음과 같을 것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순자산 시가 × 1.3) × 지분비율

- ④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주식 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20% 미만인 경우로써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⑤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지원 내용

-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사후 관리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
 - ①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③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시행령 제11조의4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내국법인을 운영하는 나사장은 디지털카메라 제조회사인 A중소기업의 카메라 순간포착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사장은 A중소기업의 주식 중 60%를 취득하였고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2년 후 나사장은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주식의 10%를 처분하였습니다. 주식 처분 후 나사장은 세액공제의 사후관리가 생각났고,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나사장님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지분비율이 감소하였지만 사후관리에 해당되지 않아 추징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 현재 지분비율 중 일부 지분비율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사후관리기간에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이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보다 감소하였더라도, 당초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지분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⁵⁾

연구·인력개발 지원

5) 조세특례제한법, 서민-2014-법령해석법인-21447, 2015.03.31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6-8

외국인 기술자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란?

-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지원 내용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

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 기술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6-9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

기업부설 연구소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연구소

- ** 1. 연구소로 신축·증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 2년
2. 연구소로 신축·증축 및 대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 : 1년

지원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7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복 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제46조, 제184조, 시행령 제23조,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7장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 7-1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 133
- 7-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136
- 7-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140
- 7-4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43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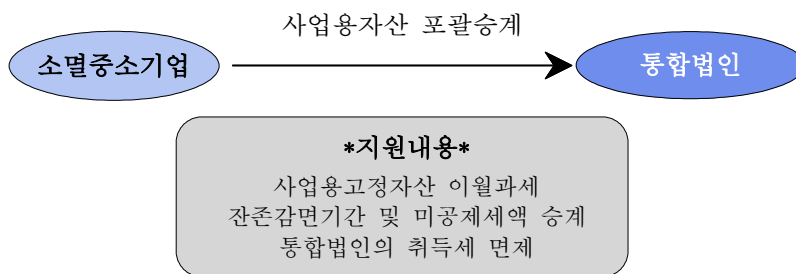
통합한 중소기업

7-1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 소멸법인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지원 대상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및 통합법인



지원 요건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간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의 통합
- ①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며 통합법인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 유지
- ②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
- ③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통합이 아닐 것

지원 내용

-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사업용 고정자산(유형,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적용
-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¹⁾ 가능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통합법인은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미공제세액 승계** 가능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통합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한 해당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 면제

유의 사항

-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추징**
 - ①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5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 * 승계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함
 - ②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 * 주식의 처분은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 제외)포함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법인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5조
-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8조의3,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용어 해설

- 이월과세 :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통합법인이 해당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
-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질문과 답변

- ▶ **질문** > 사용 재산을 중소기업간 통합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한 후 일부를 분양 또는 자가사용한 경우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 ▶ **세무사 답변** > 중소기업통합에 대한 세제지원의 입법취지는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 볼 때 임대면적이 확대되어 통합 전 임대업 사용 면적을 유지하면서 초과된 면적의 일부를 분양 또는 자가 사용하였다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²⁾

MEMO



2) 대법2014두37931,(2014.10.15.)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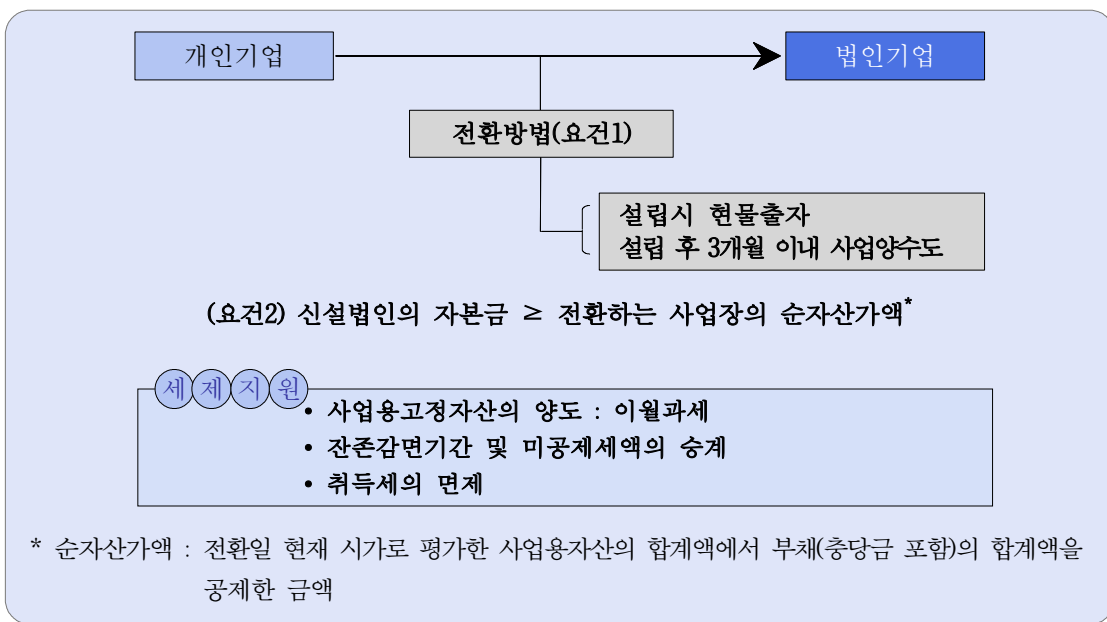
7-2

법인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양도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

-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으로 법인전환한 소멸기업(거주자) 및 전환법인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지원 내용

-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유형·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적용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소멸되는 개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및 잔존감면기간 승계 가능³⁾

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의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미공제세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거주자의 미공제세액 승계
-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세 면제

유의 사항

-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추정**
 - ①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⁴⁾하는 경우
 - ②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⁵⁾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자산을 처분(임대포함)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수용이나 법령에 따른 사업의 폐지 및 재산 처분은 제외) 면제 받은 취득세를 추정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법인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15조
-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28조의 2,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4) 승계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함

5) 주식의 처분은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 제외)포함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나사장은 매출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법인형태가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던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현물출자할 때가 아닌 법인에서 양도할 때 납부할 수가 있고, 법인 명의로登記할 때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사장은 공장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매진하던 중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였으니 추가세액과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라는 경정 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사장은 추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자 다급한 마음에 세무사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세무사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시기를 법인이 양도하는 시점으로 늦추고 그 납세의무자도 법인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인전환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과소신고된 양도소득세는 법인의 양도시점에 납부가 가능하나 취득가액을 잘 못 산정한 부분은 나사장의 과실이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⁶⁾

나사장은 법인으로 전환 후 공격적인 사업 확장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시기에 생 각치 못한 양도소득세 추가 경정 고지를 받아 심리적 압박이 있었으나 가산세만을 부담 하면 된다는 세무사의 답변을 듣고 한 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조심2015서4134(2015.12.04.)

질문과 답변

▶ **질문 1)** 주택임대사업을 하다가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법인전환 할 당시에는 그 출자가액이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지만 법인 설립 후 3개월 내에 자본금을 증자한 후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 **〈세무사 답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즉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출자가액은 법인설립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당시에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다면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자하였더라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7)

▶ **〈질문 2〉** 개인사업자로 양어장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어장으로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쳐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 건물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세무사 답변〉** 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 기한 내 제출 규정은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가 아닌 당해 과세연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이월과세 적용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므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8)

7) 조심2015지536 (2015.05.27)

8) 광주지법2015구합12052(2015.11.26.)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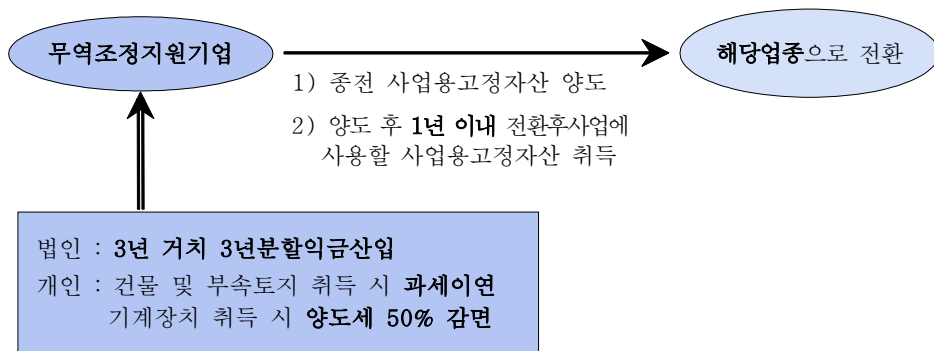
7-3

무역조정지원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업종전환을 위하여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개인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 법인은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

-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고 1년 내에 전환 후 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무역조정지원기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FTA 실행으로 인하여 기업이 심각한 피해(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매출액 또는 생산량 등이 10% 이상 감소)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해당 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서비스업, 일정한 엔지니어링사업, 일정한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교습학원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운영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일정한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지원 내용

● 법인인 경우

전환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과세이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불산입** 하였다가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산입**

$$= (\text{전환전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차익} - \text{이월결손금}) \times (\text{전환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금액} \div \text{전환전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 거주자(개인)인 경우

① 양도소득세 50% 감면

전 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전환 후 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전환 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50% 세액감면**

$$\text{세액감면액} = (\text{전환전 사업장 건물 및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에 따른 산출세액}) \times (\text{전환후 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 \div \text{전환전사업양도가액}) \times 50\%$$

②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전환전사업 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과세이연**

$$\text{과세이연금액} = \text{양도차익} \times (\text{전환후 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가액} \div \text{전환전사업양도가액})$$

유의 사항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이자상당액(1일 : 0.03%)**을 가산하여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

- 사업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
- 전환사업 개시일 부터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인 경우**

- ①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의금산입조정명세서,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거주자(개인)인 경우**

- ① 과세이연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제출
- ② 세액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시행령 제30조

용어 해설

- **과세이연** :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과세이연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7-4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 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을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⁹⁾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원 요건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다음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외(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의 지역에서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 ① 전환 전 사업의 양도·폐업 후 1년(공장신설은 3년)이내 전환사업으로 전환
 - ② 전환 전 사업을 축소하고(기준총매출액 50%이하) 전환 후 사업을 확대(기준총매출액 50%이상)¹⁰⁾

해당 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전기통신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서비스업, 일정한 엔지니어링사업, 일정한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교습학원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운영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일정한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 시설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9)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10) 기준총매출액이란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을 말함

지원 내용

-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유의 사항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이자상당액(1일:0.03%)을 가산하여 법인세(소득세)를 납부

- 사업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
- 전환사업 개시일 부터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질문과 답변

▶ **질문** 2006년부터 10년간 건설업을 운영하던 나사장은 건설업의 불황으로 이를 폐업 하고 2016년부터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2016년 법인세 산출세액이 1억8천만원이라면 나사장이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으로 절세할 수 있는 법인세는 얼마일까요?

▶ **〈세무사 답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업종전환 후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의 50%인 9천만원을 감면받아 1억8천만원에서 9천만원을 차감한 9천만원만을 2016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8장

지방이전 지원

- 8-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 146
- 8-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151
- 8-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54
- 8-4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56
- 8-5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58
- 8-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59
- 8-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 160
- 8-8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 162
- 8-9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 164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지원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고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① 공장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
 - ② 기존공장 양도 또는 폐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 (단,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지원 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¹⁾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유의 사항

-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
 - 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해당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 제60조, 시행규칙 제22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절세는 서울 문래동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주 거래처의 지방이전으로 경상북도 영주로 공장 및 사업장을 전부 이전할 것을 고려중입니다. 이에 담당 세무사에게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없는지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현재 주식회사절세의 기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 ① 법인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제조업) : 2005.1.1
- ② 서울 공장 양도일 : 2015.12.31
- ③ 경북 영주로 이전일 및 사업개시일 : 2016.1.1
- ④ 2016년 과세표준 : 1,000,000,000
- ⑤ 2016년 산출세액 : $200,000,000 \times 10\% + 800,000,000 \times 20\% = 180,000,000$

세무사 답변

“주식회사 절세를 검토해본 결과 지방이전 조세감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현재 주식회사 절세가 법인세 확정신고시 받게되는 감면세액은 법인세액 10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2016년 산출세액 : 180,000,000
- ② 2016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액 : $180,000,000 \times 100\% = 180,000,000$
- ③ 2016년 납부할 세액 : $180,000,000 - 180,000,000 = 0$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주식회사 절세의 나사장은 15년째 서울 구로공단에서 금속제련업을 운영하면서 업계에서도 주목받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잘 꾸려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나사장은 최근 주변 아파트와의 환경개선 문제와 주차공간 문제로 고민이 많아 이미 경북 영주로 공장을 이전한 권영순사장에게 조언을 구하였는데 권영순사장은 공장 지방 이전 시 여러 좋은 점들을 조언해주고 특히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때문에 나사장은 서울 공장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모색하여 1월 1일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고 그해 법인세(3천2백만원) 중 전액 3천2백만원을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받는 것으로 다음연도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나사장은 차후 친구인 권세무사에게 세액감면 받은 사실을 자랑하였지만 위 사실을 들은 권세무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자문해 주었습니다.

세무사 답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100%를 감면 받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나사장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서 성장관리권역인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므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이에 주식회사 절세의 나사장은 최저한세에 해당하는 1천820만원과 가산세까지 2천300만원을 수정신고·납부하여야만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1항4호(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서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질문과 답변

- ▶ **질문 1)** 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업기간 합산을 할 수 있습니까?²⁾
- ▶ **세무사 답변)**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사업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 ▶ **질문 2)**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³⁾
- ▶ **세무사 답변)** 감면대상 공장은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46019-133, 2000.3.31.
3) 법인-89, 2014.03.0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2014.03.14 개정)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 (전화번호:)		
2 과세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 신청내용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			
10 수도권 밖 이전공장 · 본사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8	100% 32,000,000 13,800,000 13,800,00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2015.03.13 개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감면세액계산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 (전화번호:)		
⑥ 업태 · 종목 제조업/금속제련			
구공장	⑦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 (전화번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	⑨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⑩ 생년월일 ****.***.**	⑪ 업태 · 종목 제조업/금속제련	⑫ 조업개시일 1996년 1월 1일
공장이전	⑬ 구공장 이전일 2015년 12월 31일		⑭ 구공장 폐쇄(양도)일 2015년 12월 31일
	⑮ 신공장 착공일		⑯ 신공장 사업개시일 2016년 1월 1일
감면세액계산내용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산내용	⑰ 감면대상소득금액		260,000,000
	⑱ 감면비율		100%
	⑳ 감면대상세액		32,000,000원
	㉑ 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		18,200,000원
	㉒ 감면세액		13,800,000원

지방이전 지원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지방이전법인

8-2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지원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방이전법인(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이전공공기관” 은 예외로 한다.)
 - ① 수도권 밖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 또는 철거, 폐쇄한 경우
 -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 또는 폐쇄, 용도 전환한 날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지원 내용

- 지방이전법인은 이전 후에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50% 감면
 - *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 **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횡성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유의 사항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

사유	납부할 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등 이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하거나 해산 	사업폐지일 또는 해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감면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감면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에 본사 또는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본사설치일 또는 공장설치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이전후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50% 이상인 경우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임원수가 수도권의 본사의 근무하는 임원수와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세액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시행령 제54조, 제60조의 2, 시행규칙 제22조

질문과 답변

- ▶ **질문 1)**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기간 경과 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다시 추징당하게 되는지요?4)
- ▶ **〈세무사 답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
방
이
전
지
원

- ▶ **질문 2)**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⁵⁾

- ▶ **〈세무사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1.7.21., 법률 제108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

4) 법규법인 2013-487, 2014.01.20

5) 기획재정부조세특례 -1192, 2011.12.26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8-3

공장시설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

대도시 공장시설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지원 대상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있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 ②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③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범위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공장의 범위 및 과세특례 적용범위

- ◆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 ◆ 공장의 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
- ◆ 다음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 배제**
 -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
 -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 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지원 내용

- **익금불산입** :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액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계산
 = (양도가액 - 당해 공장의 장부가액 - 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이란 ?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유의 사항

-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익금산입**

절차 및 제출서류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 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8-4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지원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 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 | | | |
|---|-------------------|-------|
| ① 서울특별시 | | |
| ②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 |
| ③ 의정부시 | ④ 구리시 | |
| ⑤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 | |
| ⑥ 하남시 | ⑦ 고양시 | ⑧ 수원시 |
| ⑨ 성남시 | ⑩ 안양시 | ⑪ 부천시 |
| ⑫ 광명시 | ⑬ 과천시 | ⑭ 의왕시 |
| ⑮ 군포시 | ⑯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 |

지
방
이
전
지
원

지원 내용

- 익금불산입 :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지와 건물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액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계산
 = (양도가액 -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 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이란 ?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유의 사항

-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산입
 - 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50% 이상의 상시근무인원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
 - ③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 대지와 건물의 취득 또는 임차, 본사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외에 사용한 경우
 - ④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제출 서류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토지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 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시행령 제57조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8-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지원 대상

-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
* 신규공장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공장 양도, 기존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신규공장 취득

지원 내용

- 내국법인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 거주자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분할납부**

유의 사항

-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액 전액 익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액 전액을 납부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분할납부신청서, 이전(예정)명세서 및 이전완료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시행령 제79조의9, 시행규칙 제61조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8-6

농공단지 등에 입주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일정지역(나주 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장흥해당 일반산업단지, 북평 국가산업단지, 북평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시행령 제61조, 시행규칙 제25조

대한 세제 혜택

8-7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 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 과세 배제

지원 대상

- 2018년 12월 31일 이전 식량작물재배업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2018년 12월 31일 이전의 작물재배업 외의 부대사업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인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농업인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 포함)·군·구(자치구인 구),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

지
방
이
전
지
원

지원 내용

대상	감면 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p>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한도</p> <p>- 축산업, 임업 발생 소득과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소득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의 50%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 이월과세 적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사 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p>- 식량작물재배업 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면제</p> <p>-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대사업등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p>

유의 사항

- 농업인이 농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 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제출 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세액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시행령 제65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8-8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기업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지원 대상

-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⁶⁾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지원 내용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취득세와 재산세 추정

- ◆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 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
-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면제**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중복 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⁷⁾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⁸⁾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8)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8-9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⁹⁾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동산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200㎡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

지원 내용

-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정

- ◆ 공장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이전 지원

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중복 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¹⁰⁾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¹¹⁾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1)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9장

고용촉진 지원

- 9-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167
- 9-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69
- 9-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73
- 9-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 175
- 9-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176
- 9-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 인정 • 177
- 9-7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178
- 9-8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179
- 9-9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181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9-1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이 취업하는 기업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2.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70%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

감면기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가능

- * 단, 병역을 이행한 후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한 경우 복직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로 하며, 복직일 당시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미경과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절차 및 제출서류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와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61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20대 청년인 나직원은 작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취업청년으로써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 환급금액을 계산하였습니다. 효심이 깊은 나직원은 환급액을 어머니의 휠체어 구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여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나직원은 **연말정산 환급액을 통해 어머니에게 휠체어를 선물할 수 있을까요?**

세무사 답변

- ☞ “나직원님은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체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¹⁾

1) 원천징수-307 2012.06.01.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고용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9-2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지원 대상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근로시간 합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제외되는 근로자

-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임원
-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지원 내용

- **기업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개인)에서 **소득공제**

$$\text{소득공제금액} = (\text{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text{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times \text{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times 100\text{분의 } 50$$

- **상시근로자의 경우** :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1천만원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text{근로소득공제금액} = (\text{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text{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times 100\text{분의 } 50$$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에 고용유지의 내용,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시행령 제27조의3, 시행규칙 제61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사장은 부친에 소재하는 소기업(제조업)인 주식회사 절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사장은 올해 고용유지중소기업과세특례로 인해 절세되는 세액이 궁금하였습니다. 나사장은 세무사에게 세액 계산을 의뢰하였으며, 세무사가 보내준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2015년	2016년
매출액	1,000,000,000	850,000,000
상시근로자수	12	14
1인당 임금총액	18,000,000	16,000,000
소득금액	100,000,000	85,000,000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7,400	7,800

세무사 답변

☞ “소득공제 및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공제액은 없다고 가정,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016년 소득공제액 : $(18,000,000 - 16,000,000) \times 14 \times 50\% = 14,000,000$

2016년 납부할 세액 : $(85,000,000 - 14,000,000) \times 10\% = 7,100,000$

2016년 절감세액 : $8,500,000 - 7,100,000 = 1,400,000$

<작성요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2015.03.13 개정)

사업연도	2016.01.01.	소득공제조정명세서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 2016.12.31.		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소득공제 계산내역

① 구 분	② 근거법 조 항	③ 코드	④ 계산 기준 계 산 기준금액	⑤ 공제율	⑥ 소득공제 대상금액	⑦ 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	⑧ 소득공제액 (⑥ - ⑦)
조세 특례 제한 법	⑩ 국민주택 임대소득 공 제	제55조의2 제4항	460	해당 소득 금액	50/100		
	⑪ 주 택 임대소득 공 제 (연면적 149㎡ 이하)	법 제55조의2 제5항	463	해당 소득 금액	50/100 (‘13.1.1이후 100/100)		
	⑫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법 제30조의3	462	임금 삭감액	28,000,000	50/100	14,000,000
	⑬ 계 (⑩ ~ ⑫)	459				14,000,000	14,000,000
⑭ 합 계 (⑬ + ⑬)	499				※	14,000,000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의4서식](2014.3.14 개정)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000 (전화번호 :)	
② 과세연도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③ 소득공제금액 계산내용		
⑥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⑨-⑫)×⑪×50%, ⑥≤1,000만원]		14,000,000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⑧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⑦÷⑧)
216,000,000	12	18,000,000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⑩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⑫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⑩÷⑪)
224,000,000	14	16,000,000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사장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나사장은 나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고 세무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1. 나사장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이에 따라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그리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답변

- ☞ “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습니다.**”²⁾
- ☞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³⁾

2) 원천세과-71 2010.1.22.

3) 원천-250, 2009.03.27, 원천세과-71 2010.1.22.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9-3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지원 대상

-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①+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①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 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청년 외 상시근로자

청년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

사회보험

-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 ④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시행규칙 제61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개인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폐업 후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나사장은 새롭게 설립한 법인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신고**하려고 하며,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 “세액공제의 적정성등을 검토를 해보니 법인전환을 하기 전에 최저한세에 의하여 이월되는 미공제세액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 후에 나사장은 이러한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나사장은 이월공제에 의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창업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보지만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합니다.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입니다.⁵⁾

사례에서 나사장은 직전 과세연도의 ‘개인사업시 상시근로자 수’를 전환된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여야 합니다.

☞ 최저한세에 의한 이월공제액 확인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⁶⁾

위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⁷⁾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6항 내용 수정

5) 조세특례제한법, 서면법규과-599, 2014.06.17.

6) 조세특례제한법 144조

7) 법인세과-712, 2012.11.22.

졸업자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9-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가 복직된 경우 인건비를 기업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지원 대상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이행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킨 중소기업
*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

졸업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 ①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4조·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 ②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 ③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지원 내용

- 복직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61조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9-5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시키는 중소기업

기간제 근로자등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하는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지원 대상

- 2015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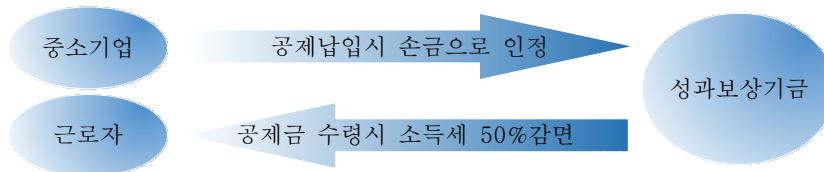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 시행규칙 제61조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인정

9-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부담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핵심인력 관련 성과기금 설치 후 부담한 기여금을 손금으로 인정



적용 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 2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손금으로 인정하고 성과보상기금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50%** 세액 감면

성과보상기금

- 성과보상기금의 재원
 - 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손금인정)
 - ②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 ③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 ④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⑤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 성과보상기금의 용도
 - ①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 ②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 ③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 ④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 ⑤ ① ~ ④ 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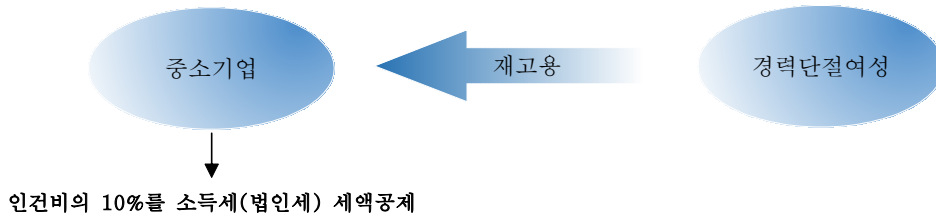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 ~ 제35조의5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7

경력단절 여성을 다시 고용한 중소기업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공제



지원 대상

- 경력단절여성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의미함

1. 재고용되기 전에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출산·육아·임신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3. 퇴직일로부터 3년에서 5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 중소기업에 다시 취직하였을 것
4.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 관계가 아닐 것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시행령 제26조의3, 시행규칙 제61조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8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지원 대상

-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써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지원 내용

- 3년 평균 초과 **10%(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text{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text{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times (1 + \text{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times \text{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중견기업 :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

- 내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
(**경우 : 10%,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5%**)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사후 관리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시행령 제26조의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9

청년 근로자를 증가시킨 기업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지원 대상

-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기업인 경우.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지원 내용

- 2015년 12월 31일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에 500만원(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Min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 : 법률 제13560호, 12조에 따라 제2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년부터 적용할 것
- ** 중견기업 :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

세액공제 대상자

- (정규직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③ 임원
 - ④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친족
 - 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및 사회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⑥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각 목(청소년유해업종)에 따른 업종에 고용된 청소년(19세 미만) 근로자

- (청년 정규직 근로자) 매월말 현재 15 ~ 29세인 정규직 근로자
- (상시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②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③ 임원
 - ④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친족
 - 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및 사회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근로자수 계산방법

$$\text{수} = \frac{\text{해당기간의 매월말 현재 근로자수의 합}}{\text{당기간의 개월수}}$$

사후 관리

- 2년 이내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감소시 다음 중 가장 큰 인원에 500만원(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추징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2.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3. 상시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 중견기업 :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10장

가업상속 지원

- 10-1 가업상속공제 • 184
- 10-2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 193
- 10-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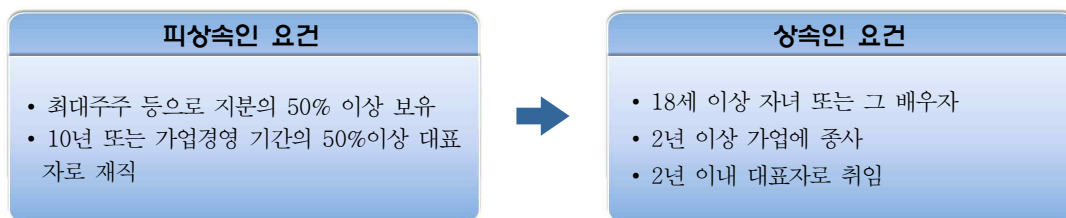
10-1

기업을 상속받은 중소기업인 및 중견기업인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상속인들이 기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지원 대상

-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을 상속 하는 경우



지원 요건

- 피상속인 요건
 - ① 지분 요건 : 중소·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상장기업은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
 - ② 대표자 요건 : 피상속인이 총 가업 영위기간의 50% 또는 10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자 등으로 재직
- 상속인 요건¹⁾
 - ① 연령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② 재직 요건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²⁾
 - ③ 대표자 요건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가
업
상
속
지
원

1)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 포함
 2)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예외 인정

지원 내용

- ①과 ② 중 작은 금액을 공제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② 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한도액 :

10년 이상 → 200억원, 15년 이상 → 300억원, 20년 이상 → 500억원

① 개인기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가액
 ② 법인기업 :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주식 등 가액 × (1 - 사업무관자산* / 법인총자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열거된 자산

-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전체 한도는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한도로 하고, 개별 기업의 공제한도는 각 개별 기업의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

사후관리

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 추정³⁾

- 가업용 자산의 20% (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일정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거나 국가 등에 증여, 내용연수가 지나 처분하는 경우 등은 제외)
-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상속인 등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된 업종의 변경 및 1년 이상 휴업, 폐업한 경우는 포함)

3) 7년 이내 위반 시 100% 추정하며, 이후 1년경과 시 마다 10%씩 낮은 추정률을 적용함.
 단, 이월과세로 증가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세 추정세액에서 공제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조직변경 또는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지분이 감소하였으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해당 시 제외)
- 각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20%)에 미달하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① 가업상속공제신고서
 - ②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
 - ③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④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용어 해설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 5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중견기업 :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포함하나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은 제외
- 최대주주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등을 합하여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 기준고용인원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

가업상속 지원

질문과 답변

▶ **질문 1)** 2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2년 12월에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시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인 저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최대 주주 지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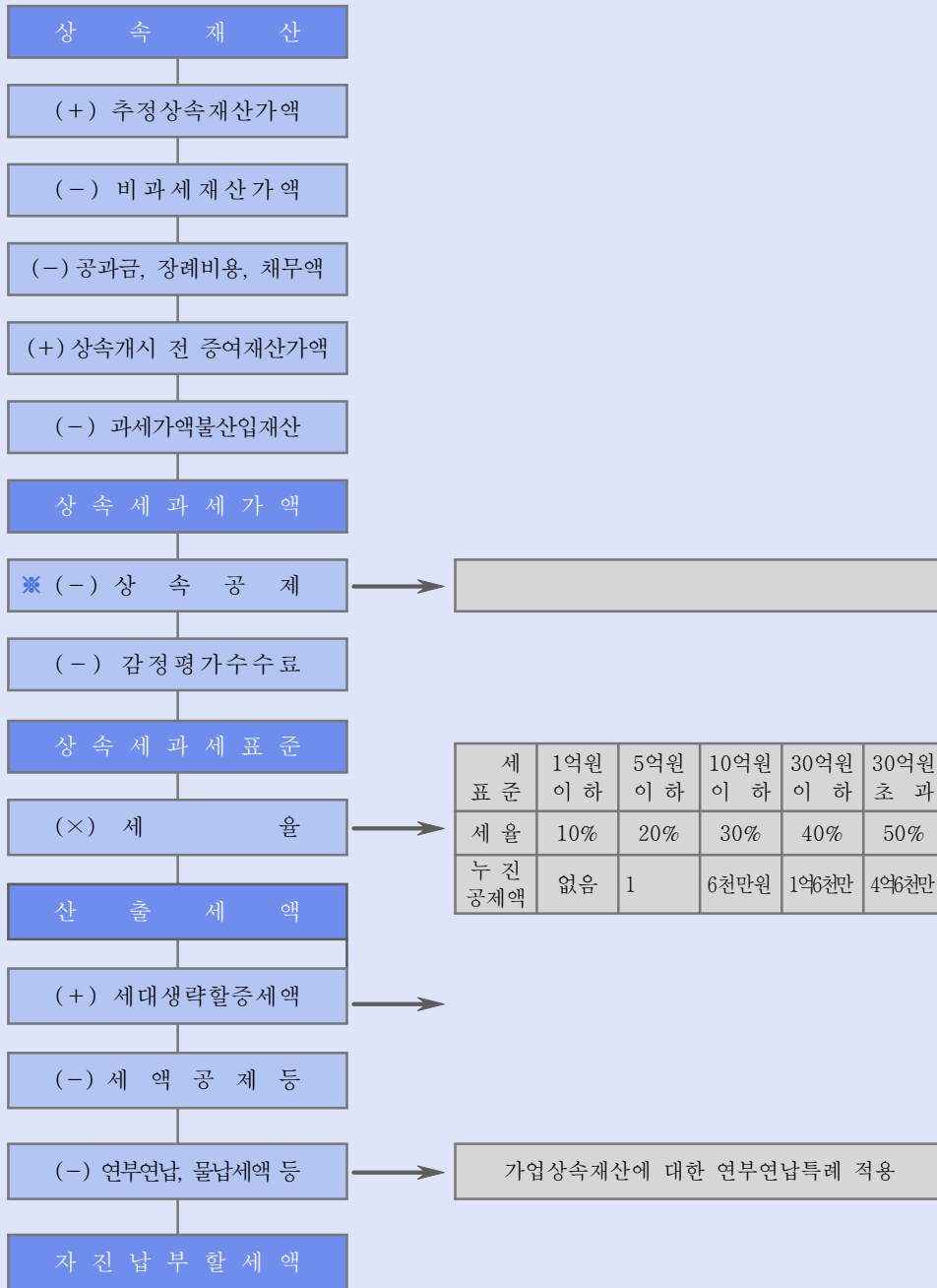
▶ **〈세무사 답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장의 대표자 기간이 포함 가능하므로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⁴⁾⁵⁾

▶ **〈질문 2〉** 저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학원법인을 상속받아 계속 가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학원건물과 토지는 제 명의로 변경하고 학원법인에 임대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일부 전환하기는 했지만 가업상속재산은 처분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인 제가 계속 보유하여 유지하고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요?

▶ **〈세무사 답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으로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개시 후 10년 동안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정도로 상속인이 계속하여 가업을 이어가는 경우 세제상 지원하는 것이므로, 학원업에 사용되던 가업상속공제대상 재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함으로써 업종을 일부 전환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⁶⁾

4) 서면상속증여2015-611 (2015.06.11.)
 5) 기준법령해석재산2015-22(2015.10.28.)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기간 기산일 판단 기준은 주된 업종을 변경한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입니다.
 6) 조심2013부1082(2013.06.28.)

< 상속세 계산 흐름도 및 기업상속 지원 내용 >



기업상속 지원

용어 해설

- 세대생략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 다만,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는 제외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A제조업과 B도매업을 운영하던 나 사장은 58세의 나이에 갑작스런 불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에만 매진하느라 여유 자금을 넉넉히 형성하지 못했던 나 사장은 이대로 있다가 불시에 사망할 경우 30년 동안 어렵게 이룬 가업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공중분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 문득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자녀들이 가업을 이어받을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라 다음날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세무사를 만난 나 사장은 세무사의 질문에 맞춰 30년을 운영한 A회사와 27년을 운영한 B회사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A회사는 평가액이 90억 정도로 나 사장이 지분 전부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액 60억 정도의 B회사는 지분의 70%를 소유하고, 양 법인 모두 운영기간 내내 대표로 있었고, A회사는 큰아들에게 B회사는 작은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으므로 5년 전부터 아들들은 각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세무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상속인 중 1인이 가업전부를 상속받아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했지만 2016년부터는 공동상속 및 둘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각 상속인들이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모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A회사, B회사 주식가액 각각 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사장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주식평가액인 150억 정도를 가업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이제 회사와 가족들 걱정은 접고 남은 생애 집중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세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임원은 아버지인 나 사장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업상속공제액을 계산하고 제출서류를 작성해 봅시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270억원이며, 이 중 나 사장이 1인 주주로 있던 법인 (주)질세의 주식 평가액은 250억원입니다. 상속공제액은 편의상 가업상속공제 200억원과 기타공제 5억원으로 하겠습니다.

- 상속현황
 - 피상속인 나 사장 : A법인의 설립자로 대표이사 (법인설립일 : 2002. 7. 1)
 - 상속인 : 자녀 나 임원 (A법인 임원, 재직기간 3년)
 - 상속개시일 : 2016. 1. 5.
- (주)질세(중소기업)의 주주 및 현황
 - 주주현황 : 피상속인 나 사장 (100%)
 - 업종 : 제조업
 - 발행주식 총수 및 상속개시일 현재 1주당 가액 : 250,000주, @100,000
- 상속현황 :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식 모두를 가업에 종사하는 자녀 나 임원이 단독 상속
- 가업상속공제액은 얼마일까요?
 - 가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15년 미만에 해당
 - 가업상속재산가액 : 250,000주 × @100,000 = 250억원
 - 가업상속공제액 : (①과 ②중 작은 금액) : 200억원
 -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 250억원
 - ② 한 도 액 : 200억원 (10년이상 15년 미만 공제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2015.03.13. 개정)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앞쪽)					
관리번호		-			
신고인	② 성명	나 임원	③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자
	④ 주소	(㉞)			전자우편 주소
피상속인	⑤ 성명	나 사장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소				
⑧ 상속원인		사망	⑨ 상속개시일	2016. 01. 05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⑩ 상속세과세가액		27,000,000,000	㉕ 신고불성실가산세		
⑪ 상속공제액		20,500,000,000	㉖ 납부불성실가산세		
⑫ 과세표준 (⑩ - ⑪)		6,500,000,000	㉗ 납부할세액(합계액)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⑬ 세율		50%	납부방법		납부신청일자
⑭ 산출세액		2,790,000,000	㉘ 연부연납세액		
⑮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㉙ 물납		
⑯ 산출세액 (⑭ + ⑮)			현금 ⑳ 분납		
⑰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㉚ 신고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 (2015.03.13. 개정)

기업상속재산명세서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분	자산종류	금액	
	⋮	⋮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기 타		
	① 계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25,000,000,000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③ 총자산가액		25,000,000,000
	사업무관자산 가액	㉑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③ - ④)		25,000,000,000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⑤ ÷ ③)		100%	
⑦ 기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② × ⑥)		25,000,000,000	
다. 한도액 계산			
⑧ 기업영위기간	⑨ 기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① 또는 ⑦)	⑩ 한도액	⑪ 기업상속공제액 (⑨와 ⑩ 중 적은 금액)
10년 이상 15년 미만	25,000,000,000	200억원	20,000,000,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015.03.13. 개정)

가업상속공제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가. 가업현황				
호(법인명)	(주)절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성명(대표자)	나 임원	주민등록번호		
개업연월일		업종		
사업장소재지	(☎)			
중소기업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상장 여부(상장일)	<input type="checkbox"/> 상장(. .) <input type="checkbox"/> 비상장	
	<input type="checkbox"/> 해당 안됨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나. 피상속인				
성명	나 사장	주민등록번호		
가업영위기간	2002.07.01.~2016.01.05	대표이사(대표자) 재직기간	2002.07.01.~2016.01.05	
최대주주등 여부	여	특수관계인포함 보유주식 등 지분율	100%	
다. 가업상속인				
성명	나 임원	주민등록번호		
가업종사기간	2013.01.01.~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2013.01.01	
주소	(☎)			
라. 가업상속재산 명세				
종류	수량(면적)	단가	가액	비고
주식	250,000주	100,000	25,000,000,000	
마.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20,000,000,000원		

가
업
상
속
지
원

대한 연부연납특례

기업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10-2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경우 일반 상속세와 달리 일정한 거치기간을 허용하고, 분납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승계를 지원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text{연부연납 특례 대상 상속세액} =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기업상속재산}}{\text{총상속재산가액}}$$

- ▶ 상속세 납부세액은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및 납세담보 제공

지원 내용

기업상속재산이 50% 미만인 경우	→	2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기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	3년 거치 12년 분할 납부

유의 사항

-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만이 특례대상
- 매년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원 초과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결정통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시행령 제67조, 시행령 제68조, 국세징수법 제14조

용어 해설

- 연부연납 : 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조세를 장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10-3

가업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사전상속)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및 특례세율 적용

지원 대상

-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중소·중견기업⁷⁾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여



지원 요건

- 증여자 요건
 - ① 연령 요건 : 60세 이상
 - ② 경영 요건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
 - ③ 지분 요건 : 해당 기업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상장법인 30%) 이상 소유
- 수증자 요건
 - ① 연령 요건 :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인
 - ② 재직 요건 : 증여받은 달로부터 3월 이내에 기업에 종사
 - ③ 대표자 요건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에 취임

7) 10-1 기업상속공제 용어해설 참조

지원 내용

- 특례 대상 증여재산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 × (1-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 시 20% 적용 (100억원 한도)
-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업상속 요건 충족 시 상속세 부담 완화

사후관리

증여 후 7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 기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
 -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 기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 기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
 -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포함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유의 사항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배제
-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제도 배제
- 기업의 주식을 받는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100억 한도로 합산하여 정산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시행령 제27조의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9조

질문과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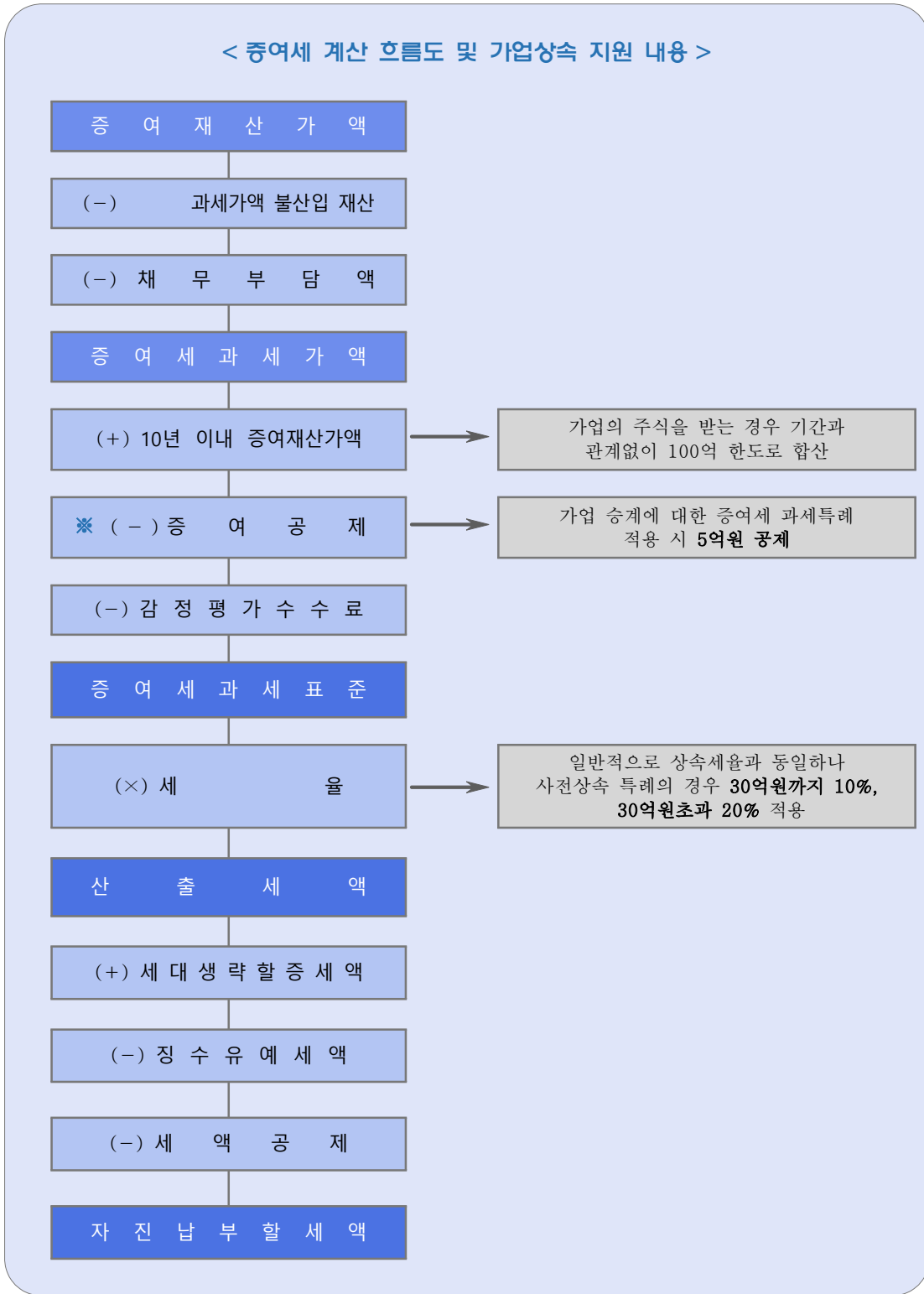
▶ **질문** 어묵 공장을 20년 이상 운영하신 부친의 어묵 제조업을 물려받고자 5년전 어묵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여 현재까지 개인과 같은 어묵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부친의 명의로 어묵 제조법인에 임대를 주고 있으며 현재 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부친이 95% 제가 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세무사 답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된 경우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하나인 10년 이상 가업 요건을 판단 시 **영위기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전부를 출자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이는 법인 전환이 아니고 신설이므로 개인사업자 영위기간은 포함될 수 없으며,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인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일부만을 출자하여 법인 전환한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⁸⁾

가
업
상
속
지
원

8) 서면상속증여2015-2127(2015.11.16.)

< 증여세 계산 흐름도 및 기업상속 지원 내용 >



11장

제한 등

- 11-1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 199
- 11-2 중복지원의 배제 • 205
- 1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207



따른 감면 배제

11-1

세금을 감면받는 법인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우대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 기업 규모별 최저한세 적용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졸업 후		그 외 중견·대기업		
		1~3년	4~5년	과표 100억이하	과표 100억~1천억원	과표 1천억이상
최저한세	7%	8%	9%	10%	12%	17%

?

- ◆ 의의 : 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받더라도 국가가 정한 최저한의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 ◆ 최저한세 대상 법인세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 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
 - 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6조)
 - ③ 외국법인의 지점세(법인세법 제96조)
 - ④ 가산세, 조세감면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추정·납부하는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 ⑤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세액공제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2항)
- ◆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준비금,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 ◆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 Max [①, ②]
 - ①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 × **7%** (일반기업 8%~17%)
 - ② 조세감면 후 법인세액

주요 적용대상

구분	법조문	감면내용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금액	6-2 제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3-2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3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8-3 제60조 제2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8-4 제61조 제3항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8-2 제63조의 2 제5항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
세액공제	5-1 제5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4-3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6-1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아닌 자만 해당)
	6-3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4 제12조 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6-6 제12조의 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6-7 제12조의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5-3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8 제25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4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7 제25조의 3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2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9-4 제29조의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7 제29조의 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8 제29조의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9 제29조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5 제30조의 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9-3 제30조의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7-1 제31조 제6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미공제 세액 승계
	7-2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따른 미공제 세액 승계
5-5 제94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 특례의 제한 등

구분	법조문	감면내용
법인세 면제 세액감면	3-1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1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4 제12조 제1, 3항	기술이전 및 기술 대여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6-5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7-1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7-2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7-4 제33조의 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1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8-6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8-7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

최저한세로 배제되는 감면·공제의 적용순서

-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감면을 배제
 - ①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②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③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
 - ④ 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 ⑤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 최저한세가 적용 되는 감면과 그 밖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을 먼저 적용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시행령 제126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절세는 야심차게 준비한 햇님빵☺이 인기를 얻어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2016년 중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종원업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한층 품미가 깊은 고급화된 제품 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절세의 나사장은 2016년 매출이 급성장하였지만 사업확장으로 많은 투자를 하였고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어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감면을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주식회사 절세의 사업용 자산 투자, 고용 증가, 연구개발비 투자 등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2016 사업연도에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전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절세의 납부할 세액 및 이월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주식회사 절세의 납부할 세액

① 과세표준 계산 및 산출세액

- 당기순이익 : 420,200,000원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접대비부인액) : 24,300,000원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대손 부인액 손금추인) : 12,000,000원
- 과세표준 : 432,500,000원
- 산출세액 : 66,500,000원

② 세액공제 · 세액감면 대상 세액

- 최저한세 적용 대상 (57백만원)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45,000,000원
 -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2,000,000원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6,000,000원)

③ 최저한세 적용 대상 중 공제 가능 세액

- 최저한세 : 30,275,000원(432,500,000 × 7%)
- 공제 가능 세액 : 36,225,000원(66,500,000원 - 30,275,000원)
 - * 공제 배제세액 : 57,000,000 - 36,225,000 = 20,775,000원

④ 납부할 세액 (14,275,000원)

- 산출세액 66,500,000원
- 공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36,225,000원), 최저한세 적용 제외(16,000,000원)

⑤ 이월 세액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0,775,000원)

조세 특례의 제한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3.14>

(앞쪽)

업 연도	2016.01.01. ~ 2016.12.3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 인 명	주식회사 절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내역

구분	코드	②감면 후 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 후 세액
⑩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420,200,000			
소득 ⑩익금산입	02	24,300,000			
조정금액 ⑩손금산입	03	12,000,000			
⑩ 조정 후 소득금액 (⑩+ ⑩- ⑩)	04	432,500,000	432,500,000		432,500,000
⋮					
⑩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⑩ + ⑩ - ⑩)	10	432,500,000	432,500,000		432,500,000
⋮					
⑩ 차가감소득금액 (⑩ - ⑩ + ⑩ + ⑩)	15	432,500,000	432,500,000		432,500,000
⑩ 소득공제	16				
⑩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	17				
⑩ 과세표준금액 (⑩ - ⑩ + ⑩)	18	432,500,000	432,500,000		432,500,000
⑩ 선박표준이익	24				
⑩ 과세표준금액 (⑩ + ⑩)	25	432,500,000	432,500,000		432,500,000
⑩ 세율	19	20%			
⑩ 산출세액	20	66,500,000	30,275,000		66,500,000
⑩ 감면세액	21				
⑩ 세액공제	22	57,000,000		20,775,000	36,225,000
⑩ 차감세액 (⑩ - ⑩ - ⑩)	23				30,275,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개정 2014.3.14>

(앞쪽)

업 연도	2016.01.01. ~ 2016.12.31.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 인 명	주식회사 절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구분	근거법조항	계산기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세액
세특례제한법		5조		01	45,000,000
		제10조		04	16,000,000
		제30조의4	창년만5~29세근로자 순증분의 사회보험료(증분의 100%) 창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분의 50%)	4Q	12,000,000
	합	계		30	73,000,000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연도	요공제세액		당기공제대상세액					⑩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⑩ 기타사유 로 인한 미 공제액	⑩ 공제세액 (⑩ - ⑩ - ⑩)	⑩ 소멸	⑩ 이월액 (⑩ + ⑩ - ⑩ - ⑩)	
	당기분	이월분	당기분	⑩1차 연도	⑩2차 연도	⑩3차 연도	⑩4차 연도						⑩5차 연도
04	16,000,000		16,000,000					16,000,000	0	0	16,000,000		0
01	45,000,000		45,000,000					45,000,000	20,775,000		24,225,000		20,775,000
소계	12,000,000		12,000,000					12,000,000	0		12,000,000		0
4Q													
합계	73,000,000		73,000,000					73,000,000	20,775,000		52,225,000		20,775,000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개정 2015.3.13>

(제1쪽)

업 연 도	2016.01.01. ~ 2016.12.3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 인 명	주식회사 질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세 액 구 분	①구 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대상세액	④감면(공제)세액
세 액 구 분	소 계		170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101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66	16,000,000	16,000,000
	소 계		180	16,000,000	16,000,000
합 계	(소계 + 166)		110	16,000,000	16,000,000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제2쪽)

세 액 구 분	①구 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대상세액	④감면세액
세 액 구 분	계		30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31	45,000,000	24,225,000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32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14Q	12,000,000	12,000,000
	소 계		149	57,000,000	36,225,000
합 계	(30 + 149)		150		
공제감면세액 총계	(166 + 150)		151		36,225,00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3.13.>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신청인	①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표자 성명 이사장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000(전화번호:)		

② 과세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③ 신청내용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4항	131	3%	45,000,000	24,225,000
⑭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9항	132	25%	16,000,000	16,000,000
⑫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3항	14Q	100%	12,000,000	12,000,000
⑮ 세액공제 합계		1A3		73,000,000	52,225,000

조세특례의 제한 등

배제

11-2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이 중복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조세지원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을 배제

- 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아래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이 불가하고,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자산별로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 가능

분	법조문	조 세 지 원
5-1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6-3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3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8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4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7	제25조의 3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2	제26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5-5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②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는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

구 분	법조문	조 세 지 원
5-2	제26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9-3	제30조의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구 분	법조문	조 세 지 원
5-2	제26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9-9	제29조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③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

구 분	법조문	조 세 지 원
5-1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6-3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3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8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4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7	제25조의 3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2	제26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9-9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3	제30조의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5-5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분	법조문	조세지원
3-1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1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5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7-1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7-2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7-4	제33조의 2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1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2	제63조의 2 제2항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8-6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8-7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4-9	제85조의 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5-6	제104조의 24 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④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구분	법조문	조세지원
3-1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1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5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7-1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7-2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7-4	제33조의 2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1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2	제63조의 2 제2항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8-6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8	제85조의 6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5-6	제104조의 24 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하는 법인

11-3

산업시설 및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하여 일부 조세감면 적용 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배제 대상

-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
 - ②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 ☞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감면 적용

● 배제 대상자산

-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 당해 공장의 연면적: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 다만,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제외
- ② 그외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를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조세감면 적용

● 조세감면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유형	조 문	배제대상 자산
①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 § 5①1,2	- 사업용자산 -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②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법 § 11②3	-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③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 24①1,2	-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 첨단기술설비
④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 25 (7,9는 제외,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	- 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 -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 산업재해 예방시설 - 광산보안시설 - 위해요소 방지시설 - 해외자원 개발설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배제 대상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

● 배제 대상자산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를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조세감면 적용

● 조세감면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

유형	조 문	배제대상 자산
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법 § 11②3	-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②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 24①1,2	-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 첨단기술설비
③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 25 (①7,9는 제외)	- 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 -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 산업재해 예방시설 - 광산보안시설 - 위해요소 방지시설 - 해외자원 개발설비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시행령 제124조, 시행규칙 제5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판단

구 분	1990.1.1. 이후 사업개시		1989.12.31. 이전 사업개시	
	증설투자	대체투자	증설투자	대체투자
일반기업	×	×	× (산업단지·공업 지역 ○)	○
중소기업		○		

조세 특례의 제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 의정부시 • 구리시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데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p>성장관리권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북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 •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승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분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술리·내강리만 해당한다)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p>자연보전권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 용인시(김광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울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

사업장 소재지별 공제·감면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배제. 다만, 벤처기업은 감면 허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공제 배제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배제, 다만, 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전환하는 경우 허용

2016

조세지원

: 2016년 4월

발행처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전 화 : (042)481-4577

한국세무사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명달로 105

전 화 : (02)587-3572



중소기업청

www.smba.go.kr



한국세무사회

www.kacpta.or.kr

집필진

오 보 언 사무관

장 기 락 세무사

이 대 규 세무사

여 지 윤 세무사

최 대 영 세무사

권 오 정 세무사

임 금 숙 세무사